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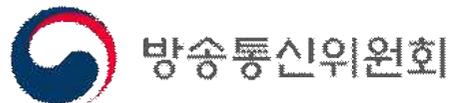
2017년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8.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38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 목 차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 1. 그간의 정책성과 ..... 1
  - 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 11
-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9
  -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 19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21
- III. 세부 추진계획 ..... 25
  - 전략목표 I ..... 25
  - 전략목표 II ..... 60
  - 전략목표 III ..... 91
  - 전략목표 IV ..... 133
- IV. 환류 등 관련계획 ..... 159
  - 1. 이행상황 점검 ..... 159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61
  - 3. 변화관리 계획 ..... 166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 173
- 【붙임】**
  - 1. 성과지표 현황 ..... 175
  -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등 연계현황 ..... 181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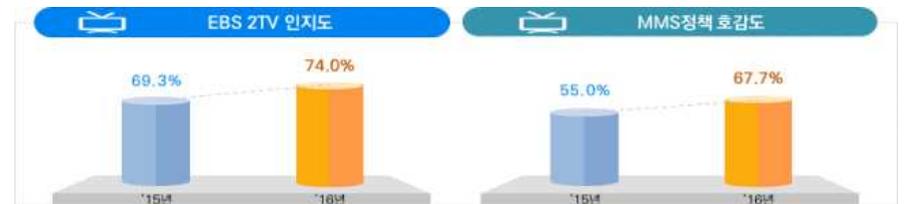
□ EBS 2TV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EBS의 MMS 시범방송(EBS-2TV) 실시로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넓히고 사교육비 경감 등 국민의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EBS-2TV 전용 신규프로그램 제작지원(20억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였고, 다문화사회 관련 콘텐츠 등 공익적 교육프로그램의 신규 편성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 EBS-2TV 신규제작 재원 : '15년 12억원(EBS 자체 재원)→ '16년 20억원(방발기금 지원)  
 < EBS-2TV 주요 방송프로그램 >



○ SPOT 영상·SNS·각종 설명회·전시회를 통한 채널 홍보 노력의 결과 인지도 및 MMS 정책 호감도가 상승하였으며, 시청자의 EBS-2TV에 대한 채널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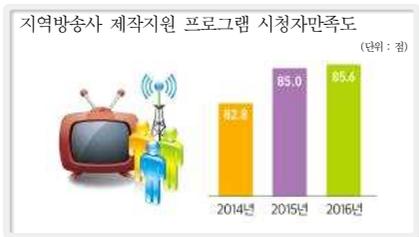
※ 출처: 「2016년 EBS 2TV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16.8월, 한국리서치, 전국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17년 수도권 지역 UHD 본방송 개시 예정인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허가('16.11.11)하였습니다.
- 차세대 방송서비스 환경에서 고품질의 UHD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볼거리 및 보편적 접근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세계최초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으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및 방송장비 산업 등 관련 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역방송사 제작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제작지원 프로그램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실적을 거두는 등 각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우수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를 마련하고, 판매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 글로벌 방송영상 마켓인 부산콘텐츠마켓(BCM)에 15개사 25개 프로그램, 아시아텔레비전포럼(ATF)에 16개사 30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 등에게 콘텐츠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BCM, ATF 등 마켓 참가를 통해 KNN '전국TOP10가요쇼', 대전문화방송 '갈릭루트' 등 국내외 판매(총 계약액 약 217백만원)

※ '16년도 제작지원 프로그램 전주문화방송 '코미디도 배달됩니다', 부산문화방송 '작중우돌 만국유람기' 등 11개 프로그램 MBCNET 등에 판매(246.2백만원)

- 지역방송 종사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53명이 수료하고 평균 90.9점의 교육 만족도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제작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수출 등을 진흥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에 기여하였습니다.

※ '태양의 후예'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관련 소비재, 한류관광 수출액, 일자리 창출 등 총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함(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관련 언론 보도 >

- 국제신문 【태양의 후예 경제적 효과 1조원 한류관광객 10만명, 일자리 5000개('16.4.29)】
- 머니투데이 【"나가수,꽃할배 이제는 포맷 수출이 대세..."('16.5.12)】
- 매일경제 【SBS "베트남판 오마베 제작..." 한류 콘텐츠 확산 기여('16.10.18)】



□ **가상광고·협찬고지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 가상광고의 허용장르를 오락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가상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의 광고 매출액 증가 및 가상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15.9월)

※ ‘16년 지상파 3사 가상광고 매출액은 182억원으로, ‘15년(58억원) 대비 124억원(약 213%) 증가

○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상품명·상표까지 확대하는 등 협찬고지 형식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원 조달에 기여하였습니다.(‘1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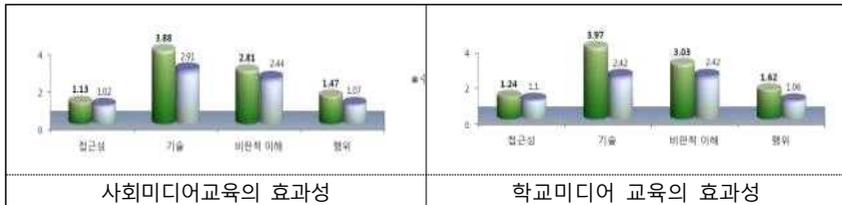
※ ‘15년 지상파 3사 협찬 매출액은 2,595억원으로, ‘13년(2,087억원) 대비 508억(약 24.3%) 증가



□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으로 미디어창의 인재 육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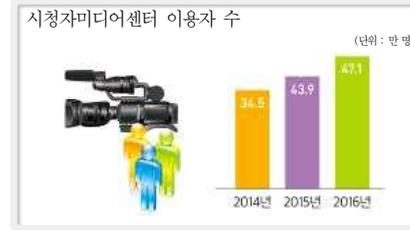
○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 수강생의 미디어리터러시 평가가 비수강생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사회미디어교육을 수강한 사람의 경우 9.86점, 학교미디어교육을 수강한 사람의 경우, 9.29점으로 수강하지 않은 사람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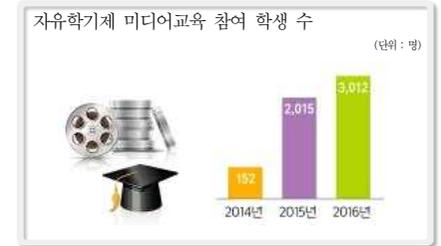


< ‘16년 미디어미래연구소 >

○ 학교별 미디어 활용정도와 학년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별 수요와 요구를 파악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부 선정 자유학기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 PA(Public Access)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 또는 라디오 방송물을 방송에 송출하는 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한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 TV 수상기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 ‘16년도 전체 보급수량 12,247대 중 91%인 11,128대를 저소득층 보급

(단위 : 대, ‘16.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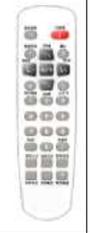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총합	총계	
저소득층 보급현황	705	638	882	475	366	664	188	1,418	1,632	30	344	1,812	259	462	199	666	388	11,128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 **이용자 중심의 보급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친화적 수신기 성능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 **화면크기 확대**(24형→28형), **장애인방송 핫키**와 점자 등이 각인된 **전용리모콘 제공**과 음성안내 기능을 개선한 장애인용TV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장애인용 TV 및 리모콘 사양 >

제품이미지		규격 및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5cm(28형) LED HDTV</li> <li>· 전용리모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면해설 설정 바로가기 핫키</li> <li>- 리모콘 버튼 점자 양각</li> </ul> </li> <li>· (시각장애인)음성안내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면해설 On/Off 음성 안내</li> <li>- 현재프로그램 편성정보 음성 안내</li> <li>- 모든 TV설정 메뉴 음성 안내</li> </ul> </li> <li>· (청각장애인)자막설정 바로가기 핫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자막 On/Off 핫키</li> <li>- 자막 크기조절(대/중/소), 위치변경 등 핫키</li> </ul> </li> </ul>

□ **스마트 수화방송 기반구축을 통한 방송 접근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시청자가 수화화면 생성·제거, 크기조정 등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수화방송의 **화면 가림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 거주하는 비장애인의 시청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 개선 화면 >



\* 시범방송을 통해 수화 방송영상 크기·위치 조정 및 자막 표시위치 조정을 통해 방송영상의 가림짐 문제를 해소하고, 자막에 의해 방송의 오픈자막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 해결

□ **법제 정비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달성**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개념 및 비식별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빅데이터 등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빅데이터를 통한 범죄예측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향후 5년 내 빅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에 약 5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16.6월, 한국경제연구원)

○ 법 위반 기업의 CEO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 권고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 유상제공 여부 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민번호 및 불법유통 게시글이 노출된 국내·외 웹사이트를 탐지·삭제 하였습니다.(주민번호 4,019건, 불법유통 게시글 41,859건 삭제)

□ **규제 개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16.1.12)하여 위치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 하였습니다.

\* 추진 목표 :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보호



□ 긴급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위치정보 전달체계(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 실증시험 분석을 통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구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경찰이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색비용을 감소하였습니다.

※ 긴급구조기관 대상 긴급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현황('16.10월, 176,130건)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자율동아리인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학교(300개) 학생을 (1083명) 대상으로 교육 전·후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도를 측정한 결과, 14.33점이 향상(교육 전 76.05점 → 교육 후 90.38점)되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신설·운영하여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 교육·전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가정 내 변화상을 비교분석하는 등 3단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과 교육현장의 의견과 과거 조상들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침을 준 것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바르게 쓰기 등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정부의 일방향적인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통신시장에 영향력이 큰 SKT, KT, LGU+ 등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함으로써 사업자 및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 이용자의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감소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었습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각 사별 자율준수 편람 제작, 영업 등 금지행위 위반 행태가 많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 실시 (SKT 312명, KT 645명, LGU+ 474명, SKB 290명, SK텔링크 60명 총1,781명)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 고가단말기·고액요금제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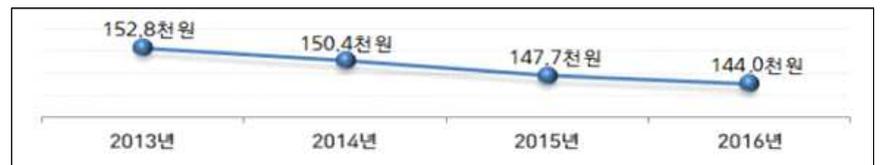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 주요 변화>



○ 1인당 데이터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14년 평균 150,350원 → '16년 평균 144,001원

<가계통신비 추이>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이동통신3사의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실제 차단율을 조사·공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였습니다.
  - ※ 이통3사 스팸 차단율 : **6.7%p 상승**('15년 하반기 80.9% → '16년 상반기 87.6%)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15.1-6월간 스팸 문자메시지 5,000개를 전송, 이통사별 스팸문자의 차단율을 측정(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 가입자 대상)
- 정부3.0의 과학적 행정 구현 일환으로 스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스팸차단에 활용한 결과 **행자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스팸 차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후후, 후스쿨, 카카오 등)에게 스팸 정보(122,901건, '16.10월)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법스팸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 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무 강화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방송사 및 미디어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방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성·막말 등의 기준을 방송심의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 지진·태풍 등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피해 복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재난유형을 추가하고, 경보음 등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재난 상황 전달을 위해 관련 고시 및 매뉴얼을 개선하겠습니다.

-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통일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지원

- 프로그램 제작 예산 등 기금 지원을 확대('17년 40억원 → '21년 80억원)하고,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제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기획·제작·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증가 등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건강한 여론 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다양성 증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방송통신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상설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예방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통신시장이 복잡해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기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방송통신결합상품의 경품 기준, 위약금 면제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 인터넷 플로팅 광고 삭제제한 행위, 서비스 해지제한 행위 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등 불·편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자율 규제를 유도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집단·대형상가, 온라인 채널 등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법준수 취약지역의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고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겠습니다.

## □ 시청자 참여 확대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편성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공동체 라디오, 지역 지상파, 종합유선방송(SO) 등에 예산 지원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예산 : '08년 31억원에서 '17년 12억원으로 축소

## □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음성 등 신종스팸에 대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여 스팸 수신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유아·청소년·성인 및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맞춤형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 윤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IoT 발전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응하여 선제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추진하여 온라인상 본인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교육 및 대국민 대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업계 자율규제 제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노출된 개인정보를 감소시키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기획·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가간 APEC CBPR\*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EU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위치정보 오·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 O2O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 전 국민 미디어 교육 강화

- 방송, 영상, 인터넷, 개인정보 등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이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등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및 제작 교육, VR·드론 등 신기술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재능있는 미디어 인재를 발굴·양성하겠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17개 광역권 설치를 목표로 하여, 해당 지자체, 재정당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센터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 □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 장애인방송 자막위치의 자유조정, 음성안내 음질 개선 등 편의기능을 개선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개발하여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모두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질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제작지원을 활성화하고 자막 및 수어통역의 정확성, 주요시간대 편성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향상하겠습니다.
-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방송의 영상을 생성·제거,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 상생의 방송통신시장 생태계 조성

-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작사와 작가(스태프)간 등에 방송영상프로그램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저작권 등 수익배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앱·콘텐츠 개발 지원 및 이통사의 중소 유통점 지원 등 사업자 간 상생협력협약체를 운영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앱·콘텐츠 개발 창업지원, 우수 유통점 인증제 도입, 중소유통점 고충상담, 직영점 휴무 확대 등 지원강화 등

- 통신사·포털 등의 불합리한 CP 차별, 특수 관계인 우대, 앱등록 부당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유료방송에 대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불합리한 사후 규제체계 정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방송광고판매제도 및 협찬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광고시장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방송 매체간 균형 발전 도모

- 의무송출 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방송광고 규제 및 방송통신발전 기금 부과기준 등 지상파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는 등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 합동 UHD 점검단을 운영하여 지상파 3사 모두 '17.5.31일 본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 UHD 편성의 내실화를 위해 UHD 프로그램을 '17년 5%, '18년 10%, '19년 15% 이상 편성하도록 허가조건 부가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 < 지상파 UHD 도입 3단계 >

1단계	'17.5.31. 수도권 본방송 개시에정	
2단계	'17.12. 광역권 및 평창·강릉 일원	
3단계	~'21년 기타 시·군 지역, 전국망 구축	

※ HD/UHD 동시방송을 진행하고, '27년에 HD 방송 종료 및 UHD 전환 예정

-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 하고, MMS 채널 추가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 한류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지원

- 정부간 공동제작협정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장벽을 낮추고, 중국중심에서 이슬람·동남아 등으로 한류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방송(KBS월드, 아리랑TV) 효율화를 위해 '국제방송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증진 및 친밀감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웹드라마·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MCN(1인 창작자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II

##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 (1) 조직

- 위원회 :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4인(차관급, 부위원장은 호선)
- 사무처 : 1처 3국 1관 19과(담당관)



※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속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2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

#### (2) 정 원 : 226명

(단위 : 명 / '17.8월 현재)

구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본부	정원	226	5	5	5	15	17	77	102
	현원	235	5	6	5	15	18	80	109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	'18	'19	'20	'21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2,393	2,255	2,271	2,287	2,309
(전년대비증가율, %)		(△5.8)	(0.7)	(0.7)	(1.0)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73	186	199	212	227
(전년대비증가율, %)		(7.5)	(7.0)	(6.5)	(7.1)
○ 기본경비	42	43	44	46	47
(전년대비증가율, %)		(2.4)	(2.3)	(4.5)	(2.2)
○ 주요사업비	2,178	2,026	2,028	2,029	2,035
(전년대비증가율, %)		(△7.0)	(0.1)	(0.0)	(0.3)
□ 예산					
○ (총)지출	545	547	560	574	590
(전년대비증가율, %)		(0.4)	(2.4)	(2.5)	(2.8)
<b>【일반회계】</b>					
○ (총)지출	545	547	560	574	590
(전년대비증가율, %)		(0.4)	(2.4)	(2.5)	(2.8)
□ 기금					
○ 총지출	1,848	1,708	1,711	1,713	1,719
(전년대비증가율, %)		(△7.6)	(0.2)	(0.1)	(0.4)
<b>【방송통신발전기금】</b>					
○ (총)지출	1,848	1,708	1,711	1,713	1,719
(전년대비증가율, %)		(△7.6)	(0.2)	(0.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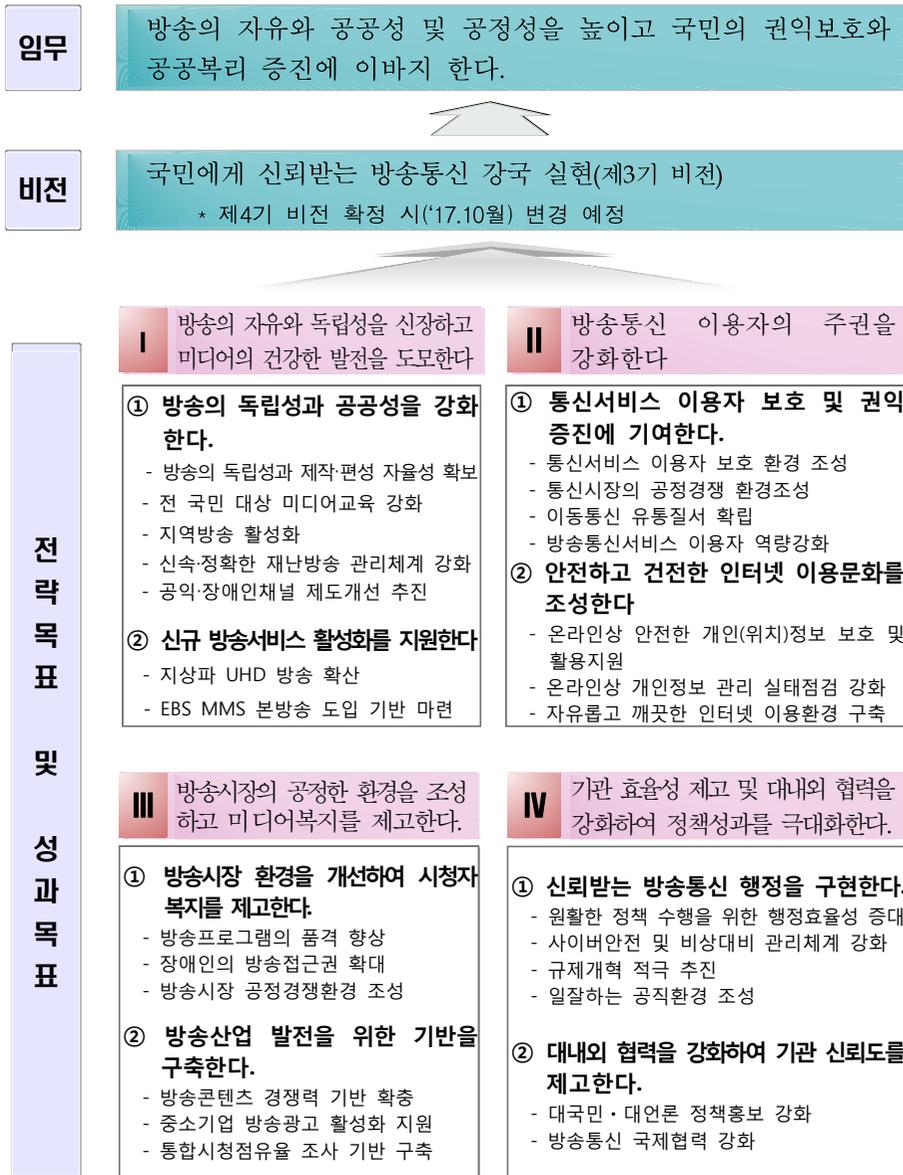
※ '17년은 예산 기준이며, '18년부터는 중기사업계획('17~'21년) 검토 기준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 출범('17.8.1)에 따른 정책기조 방향 및 국정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를 재구성
- 방통위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통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역방송 균형발전 지원 및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을 구현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촉진,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의 고양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
-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방송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품격제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제고

(2) 20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3)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8	8	26	3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b>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국정 4-1, 4-2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70-1 업무 4-1
③ 지역방송 활성화		국정 70-2 업무 1-4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70-1 업무 1-2
⑤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업무 1-1
<b>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 지상파 UHD 방송 확산		국정 70-3 업무 2-2
② 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		업무 2-2
<b>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b>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b>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국정 33-9 업무 2-3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31-6 업무 3-1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국정 31-6 업무 3-2
④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국정 33-9 업무 3-3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b>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b>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국정 33-9 업무 3-4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		국정 33-9 업무 3-4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 4-3 국정 70-5 업무 4-3
<b>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b>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b>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업무 1-1
②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70-1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업무 4-4
<b>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b>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70-4 업무 2-1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업무 1-1
③ 통합시청접유율 조사 기반 구축		업무 4-2
<b>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b>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b>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② 사이버 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④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b>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Ⅲ

###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1**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기본 방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제작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제작자 자율성 보장과 해직 방송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 요구
- **(미디어교육)** 스마트 시대 미디어 세대간, 계층간 미디어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필요
- **(지역방송)** 매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광고 매출 지속적 하락 등 재정 악화로 인해 지역방송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마련 필요
- **(재난방송)**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재난방송관련 고시 등 기준마련 필요
- **(공익채널)**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 사업자들이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유효기간(1년)이 부족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UHD)** 방송기술의 진화로 UHD 방송 환경이 도래하여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700MHz 주파수 일부가 방송용으로 배정됨에 따라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되어 조기 활성화 필요

## 기본 방향

- (MMS) 무료 지상파채널 확대와 사교육비 절감, 4차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콘텐츠 제공 확대 등 지상파 채널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EBS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작지원 확대 필요

### ◇ 그간의 성과

- (방송자유와 독립) '13년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사장 등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14.5.28.)
- (미디어교육)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 지원,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강화
- (지역방송)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15.6월)' 수립·시행
- (재난방송)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여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방안 마련
- (공익채널) '06년 이후 매년 공익채널 선정을 통해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여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기여
- (UHD) 방통위·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의결('16.11월)
- (MMS) 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6.11.3.) 하였고, EBS 2TV 시범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16년 20억원)을 통해 채널 인지도 74% 달성

## 기본 방향

### ◇ 중점추진 사항

- (방송자유와 독립)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을 부가하여 점검하고, 편성규약 운영 실태조사 및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및 해직 방송인 명예회복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국회 지원
- (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세대·계층별 미디어교육·체험 지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등 미디어 꿈나무 양성지원 확대
- (지역방송)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유통 활성화와 방송 종사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 마켓·피칭포럼 참가 등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재난방송)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자막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기준마련,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추진 및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등 중단 없는 재난방송 체계 확립
- (공익채널) 방송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UHD)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광역시 및 강원권 방송을 위한 허가를 의결하여 '17년 연내 본방송을 개시 하도록 하여, 고품질의 UHD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의 볼거리 확대
- (MMS) EBS MMS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EBS 2TV 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

###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방송자유와 독립)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회복을 통해 민주적 여론수렴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시청자가 방송에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 참여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 기 본 방 향

- **(지역방송)**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 및 알권리 확대로,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국민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 **(재난방송)**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익채널)** 공익채널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복지향상에 기여
- **(UHD)** 양질의 시청자 볼거리를 확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 **(MMS)**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채널을 확대하고 국민 사교육비 절감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I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 지상파·중편PP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이행률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① 제작편성 자율성 관련 제도개선 이행률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②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③ 지역방송 활성화	①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②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⑤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① 공익채널 제도개선 추진율
<b>I -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율
	① 지상파 UHD 방송 확산	①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② 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	①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성과목표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을 부가하여 점검하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여론수렴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세대·계층별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마을미디어교육 등 추진

□ 지역방송 활성화

-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민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 조성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 시 자막방송 외에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 방송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익채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청자 복지향상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이행률(%)	-	-	신규	100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허가 재승인 조건 부가 여부	지상파방송 관련 조건부가 여부*0.5 + 종편PP 관련 조건부가 여부*0.5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비판 제기
  - KBS·EBS·방문진 이사회 구성방식 및 사장 선임절차 등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 증대
  -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개혁과제로 언론개혁(13.8%)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다음으로 높은 순위 차지('17.4. 리얼미터)
- **(미디어교육)** 최근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지역·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더욱 심화

- 스마트 미디어기기의 출현,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센터 장비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증대
- **(지역방송)**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전체 방송산업 성장률은 둔화되어 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 감소
-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역방송의 핵심가치인 공공성·다양성 훼손 우려
- **(재난방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가 미흡
- **(공익채널)** 매년 공익채널 선정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국회 상임위 등에서 제기되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익채널 선정 수 확대 등 공익채널 제도개선을 요구

#### □ 갈등요인

-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의 경우 방송관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정당 간, 공영방송의 사측·종사자측 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임
- **(미디어교육)** 스마트 기기의 출현,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센터 장비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나,
  - 부산·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장비 노후화에 따라 방송 장비·시설이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지역방송)**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지원은 곤란
- **(재난방송)**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14.6월에 개정되었으나 투자에 소극적
  - 시설 관리 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자체적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터널이나 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공익채널)** 위원회가 고시한 공익성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별 선정 채널이 제한적이므로, 기 선정채널과 비교하여 경험과 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신규사업자는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음
  - 공익채널 선정 심사 시 기 선정채널 및 신규채널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 갈등관리계획

- **(방송의 자유와 독립)** 국회 내 범사회적 기구 설치 시 민주적 여론 수렴 및 방송 개혁입법 추진을 적극 지원
  - 방통위에서도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상호 의견 교환

- **(미디어교육)** 노후화된 부산·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 장비·시설을 디지털 방송제작환경에 부합하는 장비로 개선하여 미디어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고,
  -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타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여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지역방송)** 지역방송에 대해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해외 유통 및 뉴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광고 이외 수익 창출 다각화를 도모하여 발전기반 조성
- **(재난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없는 방송 서비스 제공
- **(공익채널)** 매년 선정 심사를 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1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I-1-①)

#### □ 추진배경

- KBS·EBS·방문진 이사회 구성방식 및 사장 선임절차 등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 증대
  -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 제기
- '13년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을 개정('14.5.28.)\*하였으나, 공영방송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평가

\* **개정사항** : ① 방통위 위원, 공영방송 사장 등 결격사유 강화(당원, 선출직 공직, 대선캠프 자문 및 고문,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경력 3년 미경과자), ② KBS 사장 인사청문회, ③ 방통위·방심위·방송사 이사회 회의 공개

\*\* **여론조사 결과** :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개혁과제로 언론개혁(13.8%)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다음으로 높은 순위 차지('17.4. 리얼미터)

####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 제10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0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9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내 방송 개혁 입법 추진시 방통위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방안 모색('17년~)
- 공정하고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 부가 및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추진
  - ※ '17년 하반기(11월) KBS, MBC, SBS 등 재허가, MBN 재승인 심사 예정
- 편성규약 운영 등 실태조사,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17년)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18년)하여, 편성 자유 및 제작자 자율성 제고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사례 분석 및 토론 워크숍 개최	1월	
	국회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여야 논의 지원	1월~12월	
	종편·보도PP 5개사 재승인 의결	3월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3월	
2/4분기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신청서 접수(설명회, 공고 등)	4월~6월	
3/4분기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	7월~11월	
	방송 공정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월~12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9월~	
4/4분기	지상파방송사·종편PP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월~11월	
	지상파방송사·종편PP 재허가·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 심사, 관련 조건 부가)	11월	
	편성규약 사항, 편성위원회 운영 등 실태조사	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공영방송사, 종편·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등

□ 기대효과

- 공영방송 등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을 제고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
- 방송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송제작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제작편성 자율성 관련 제도개선 이행률(%)	-	-	신규	100	① 편성규약 운영 등 실태조사, ②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③ 재허가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	①*0.3+②*0.3+③*0.4	실적자료

##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I-1-②)

### □ 추진배경 (목적)

○ 미디어는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필요

○ SNS 폭력, 막말 방송 등 미디어 역기능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위한 대응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및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해·활용 및 제작 등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교육 실시

\* 지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

○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16년 122개교 → '17년 200개교), 초·중·고 미디어 거점학교(54→65개교) 및 대학생 학점인증 교육과정(25→30개교) 확대 추진

○ 1인 미디어,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과 드론 활용 교육 확대('16년 2개 → '17년 7개 센터)

○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시청자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전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추진

※ 교육운영 컨설팅, 강사, 시설·장비 대여 등 교육 실시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설명회 개최	2월	
	자유학기제 및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 지원	3월~12월	
	지역대학 연계 미디어교육 전공과정 운영 지원	3월~12월	
2/4분기	부산·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장비·시설 개선	4월~12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프로그램 실시	4월~12월	
	미디어교육 강사 신규 양성	6월~12월	
3/4분기	센터별 스마트미디어교육 실시	7월~12월	
	미디어윤리교육 실시(학부모·교사 대상)	9월~12월	
	지역 센터별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8월~12월	
4/4분기	미디어교육컨퍼런스 개최	12월	
	미디어교육 성과발표회 실시	12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미디어교육 강사 워크숍 개최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다양한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이해관계집단

- (지역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시청자 행사 등 추진 시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 필요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69조 등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타 기관 미디어센터) 타 기관 소규모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인프라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시너지 효과를 기대

□ 기대효과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
- 미디어 이해, 활용 및 제작 교육 등을 추진하여 미디어 꿈나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 전국적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체험활동을 추진하고 및 방송 시설·장비 대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II-2-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방송통신 발전기금	109 (128)	141 (163)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109	1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34.5	43.8	47	50	전년도 실적 대비 '16년 말 개관한 울산센터 이용자수 기대치를 합산하여 설정	전국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용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	-	-	90.9	전년도 비공식 실적(89.5) 대비 1.5% 상승한 90.9점을 목표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 전문기관의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③ 지역방송 활성화 (I-1-③)

#### □ 추진배경 (목적)

-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필요 증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수립('15.6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기금지원심사' 실시
- 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및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자 선정	2~3월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콘텐츠 선정 및 재제작	3~5월	
2/4분기	지역방송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운영	4~12월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지원	5월	
3/4분기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6~10월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8~9월	
4/4분기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지원	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조사 실시	'17.12~'18.1월	
연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연7회 개최	수시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유통 및 제작인력 교육을 통해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 기대효과

- 지역방송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건전한 자립기반 조성
- 지역민의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II-2-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방송통신발전기금	40	40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898)	(909)
		40	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점)	-	85	85.6	86	전년도('16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하되,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	-	-	신규	85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이수율 측정, 전년도 이수율(84%)을 감안하여 상향 목표치 설정	교육 이수인원/교육 등록인원×100(80% 이상 교육시간 참석 시 이수 인정)	교육 참석자 서명지

4]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I-1-4)

□ 추진배경 (목적)

- 지진 등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재난경보음을 방송하도록 재난방송 관련 고시·매뉴얼 개정 및 터널·지하 공간에 재난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음영지역 해소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 제40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 환경 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피해 예방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17.3월	
2/4분기	1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7.4~5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17.6월	
3/4분기	2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7.7월	
4/4분기	2018년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17.9월	
	3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7.10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7.11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7.11월	
	2017년도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수신환경 조사 완료	'17.12월	
	재난경보음 등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개선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방송서비스 이용자 포함) : 지진 등 긴급 재난발생 시 자막방송 외에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하는 기준마련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해 방송 재난 체계 강화 및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16	'17
방송통신운영지원(Ⅱ-3-일반재정(1)) <sup>2)</sup>			
① 방송재난관리(7131-307) <sup>3)</sup>	일반회계	206	206
▪방송재난관리 강화		150	150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21	21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35	35
방송인프라지원(Ⅱ-2-일반재정(1)) <sup>2)</sup>			
①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3131-310) <sup>3)</sup>	방송통신발전기금	915	906
▪재난방송 중계시설 설치 지원		906	906
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131-308)		-	460
▪중계시설 연구용역		-	4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율(%)	23.3	38.8	58.2	77.6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협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17년도 안전점검 시설수(80개소)/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3개소)] × 100	내부자료

⑤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I-1-⑤)

□ 추진배경

- 현행 공익채널 유효기간(1년)은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기에 부족한 실정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정사업자가 안정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 매년 선정 심사를 해야 하는 현행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추진
- 선정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18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7.3월	
2/4분기	1/4분기 공익채널 평가보고서 발간	'17.6월	
3/4분기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 마련	'17.6월	
	2/4분기 공익채널 평가보고서 발간	'17.8월	
4/4분기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관련 공지 및 사업자 설명회 개최	'17.9월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17.11월	
	3/4분기 공익채널 평가보고서 발간	'17.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부
- 이해관계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기대효과

- 선정사업자에 대한 평가 강화로 사업계획 이행 준수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개선되어 시청자 복지 향상
-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방송통신운영지원(-)			
①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7131-303)	일반회계	2.3	2.3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모니터링		1.3	1.3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평가		1.0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공익채널 제도개선 추진율(%)			신규	100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익채널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익채널 기본계획(안)마련 x0.5)+(공익채널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x0.5)	위원회 안건 방송법 시행령	

(1) 주요 내용

□ 지상파 UHD 방송 확산

- '17.5월말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됨에 따라, UHD 방송서비스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5%)을 준수하도록 하고,

\* UHD 프로그램을 2017년 5% 이상,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편성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 '17.12월 지상파 UHD 2단계 도입을 위해 광역시권·강원권(평창 올림픽 개최지) 지상파 UHD 신규허가 추진

□ 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

- EBS MMS의 본방송 개시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의 입법을 적극 지원

- 「방송법」 개정 이후 부가채널 승인 심사기준 및 편성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EBS MMS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과학콘텐츠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16년 20억원→ '17년 50억원)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	-	-	100	새로운 시장창출 및 제도 정비 실적 - 지상파 UHD 방송프로 그램 의무편성비율 이행도 -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 달성률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0.5 + (EBS 2TV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달성률) *0.5	새로운 시장창출 및 제도정비의 관리과제 추진 실적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UHD) 해외 주요 국가들은 UHD 방송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표준화·실험방송 및 업계 간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 UHD 산업 태동기에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MMS) 주요 선진국(미국 '98년, 영국 '03년, 프랑스 '05년)에서 이미 다채널방송이 실시되었고 국내 시청자 및 시민단체는 MMS를 통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 국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EBS에 '15.2월에 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본방송 개시 필요

### □ 갈등요인

- (UHD)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이 당초 '17.2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들로 '17.5월말로 연기되어 원활한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 점검 및 신속한 해결이 필요
  - 시청자들의 UHD 직접수신 환경 조성에 있어, 수신안테나 TV 내장화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방송사·가전사)간 이견 조정 필요
- (MMS) 시청자 복지를 위해 지상파 전체로 MMS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지상파·시민단체)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EBS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유료방송/종편·보도PP) 대립
  - EBS2를 유료방송에 의무적으로 재송신하여 시청가능가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EBS)과 유료방송사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간 자율협의 영역으로 뒤야 한다는 입장(종편·보도PP 등)이 대립

### □ 갈등관리계획

- (UHD) 수도권 UHD 본방송 도입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준비상황 점검단'을 운영하여 UHD 도입 장애요인 해결
  -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도입 이후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TF'를 후속으로 운영하여 수신안테나 보급방안 등 안정적인 UHD 직접수신환경 조성 방안 논의

- (MMS) 종편·보도PP와 유료방송 사업자, EBS 등과 EBS 2TV에 한정한 의무재송신 지정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MMS 도입 대상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익성이 크고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EBS에 MMS를 우선 허용하고 승인 조건을 통하여 상업광고 금지를 부가하는 방안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지상파 UHD 방송 확산(I-2-①)

#### □ 추진배경 (목적)

- 방송기술의 진화로 보다 선명하고 실감나는 UHD 방송환경의 도래로 차세대방송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 우리나라는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를 방송용으로 배정하여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15.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7.5월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송사, 가전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준비상황 점검단'을 운영('17.2~5월말)
- '17.5월말 수도권 지역에 이어 '17.12월 광역시 및 강원권(평창을 람픽 개최지)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 '17.12월 본방송을 개시하는 지상파 UHD 제2단계(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허가 여부 결정
-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TF'를 운영('17.6월~)하여 수신안테나 보급 등 안정적인 직접수신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직접 수신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UHD 도입 준비상황 점검단 운영	'17.2월	
	광역시 및 강원권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 수립	'17.3월	
2/4분기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17.5월	
	지상파 UHD 수신환경 개선 TF 운영	'17.6월	
3/4분기	광역시 및 강원권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결정	'17.9월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중간점검	'17.10월	
4/4분기	광역시 및 강원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시청자)

-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어 고품질의 UHD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를 제고함

○ 이해관계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과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의 수행 주체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 상충 시 긴밀한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의 시작으로 고품질의 방송콘텐츠 수출을 통한 한류 확산, UHD TV·디스플레이 및 장비산업 등 연관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기대

○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이행도(%)			신규	90%	'16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인 UHD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목표(5%)대비 이행도를 목표로 설정  지상파 UHD 도입 초기의 방송사 여건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5% 이상 UHD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5% 이상 늘려가도록 허가조건을 부가하였음  ※ UHD 본방송 개시('17.5.31) 이후부터 적용	'17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5/100	지상파방송사 (KBS·MBC·SBS) U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자료	

## ② 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I-2-②)

### □ 추진배경 (목적)

○ EBS MMS 시범서비스(EBS 2TV)가 안정적으로 본방송을 개시하기 위해서 MMS 채널의 법적지위(부가채널), 채널운용(편성기준 등) 관련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16.11.3.)

※ (EBS 2TV 시범서비스) '15.2월부터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일 19시간 방송 중(지상파 10-2번, IPTV 95번, 지역케이블)



※ MMS(Multi-Mode-Service) :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1개 방송용 주파수 대역(6MHz)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EBS MMS 본방송 개시를 위하여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부가채널 의무재송신 법안\*에 대한 사업자간 원만한 협의 및 EBS 2TV 시범서비스 시청가능 가구수 확대 적극 추진

\* 국회 송희경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11.11일 발의)

- 「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시 부가채널 승인심사절차 및 편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EBS MMS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콘텐츠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16년 20억원→ '17년 50억원)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송법개정안 국회 설명 / 시행령 개정안 연구결과 접수	1월~3월	
2/4분기	EBS 2TV 유료방송 재송신 관련 시청자 민원 대응	4월~6월	
	EBS 2TV 채널 차별화 계획 협의	4월~6월	
	EBS 2TV 시청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준비	6월~7월	
3/4분기	방송법개정안 국회 입법 추진	8월~9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MMS채널 운용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8월~9월	
4/4분기	EBS 2TV 유료방송재송신 실태조사 및 사업자 의견 수렴	10월~11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시청자)

- 무료보편적 지상파 방송채널인 EBS-2TV는 주시청층인 초·중·고등학생과 영어학습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EBS-2TV 시범서비스는 '15.2월부터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를 매일 19시간(06:00~익일 01:00) 방송 중

○ 이해관계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시민단체

- (지상파방송) 무료지상파채널 확대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 혜택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 허용 등 프로그램 제작 자원마련 대책과 함께 MMS 도입대상의 확대가 필요

- (유료방송) MMS 도입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 및 광고시장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시민단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MMS 도입 전면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시청자복지 제고) EBS MMS 본방송이 개시되어 채널이 안착한다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 채널과 교육 콘텐츠가 확대되어 시청자 복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융합형 콘텐츠 제공) 융합형 과학교육 콘텐츠 확대 제공되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방송의 공익적 역할 제고

- EBS MMS를 통해 초·중등 대상 교육콘텐츠와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되어 국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 EBS-2TV 시범서비스가 제공하는 초중학 교과목 학습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의 연간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됨(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II-2-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방송통신 발전기금	(251.8)	(281.8)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01)			
- EBS 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20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신규 70	· 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EBS 2TV 본방송 개시가 늦어지고 있음. · EBS 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교과목과 외국어 콘텐츠 이외에 4차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과학교육 콘텐츠를 '17년에 실험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측정해온 시청자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유지하기 보다 MMS 채널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신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17년도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규모가 적어 신규편성 비율이 10%이하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70% 수준을 설정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외부 전문가의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기본 방향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불법스팸 유통 차단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그 간의 성과

- 자율준수프로그램 신설,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
-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으로 고가단말기, 고액요금제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패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통신소비 정착
-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본인의 게시글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국내외 웹페이지에 노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검색·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기업의 책임수준 강화
-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창작 동요제 등 체감형 윤리교육을 신설하고 대국민 캠페인 전개를 통해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기본 방향

◇ 중점 추진내용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발생시 이용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 결합상품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 금지행위와 기존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강화
-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시장안정화 방안 마련, 온라인 유통채널 등 단말기유통법 준수 취약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 지속 추진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이용자 역량을 제고
-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 ICT 산업 활성화 간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침해사고 빈발 분야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 등에 대해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실시
-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을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상관성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과 인터넷 윤리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국민행복 실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① 분쟁조정제도 마련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유선시장경품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①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율
	④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도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국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일평균 노출 페이지수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① PIMS 인증 유지 사업자수 ②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	①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삭제율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인터넷 윤리교육 만족도 ②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성과목표 II -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통신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제도 도입,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규정 마련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신설
- 결합상품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실태점검 강화
- 단말기유통법 안착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시장교란·불법 행위 근절 관련 조사·제재 강화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 등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	-	신규	7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실적	내부자료, 제재조치 관련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유무선 전화 등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은 포화상태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O2O 서비스 등 IT 기반의 신산업 서비스 출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증가 등 통신시장은 복잡·다양하게 변화

- 이에 따라 통신 관련 소비자 민원, 신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행위 증가 추세

<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2013년	56	8.9%	131	115%	198	51%

\* 단말기유통법('14.10월 시행) 위반행위도 포함

< 소비자원 주요품목별 민원상담 현황 >

품목(건)	2014년	2015년	2016년
휴대폰/스마트폰	37,870 (1위)	30,700 (1위)	28,112 (1위)
이동전화서비스	28,273 (2위)	23,952 (2위)	22,492 (2위)
백수오제품	97(10위)	19,834 (3위)	
헬스장	17,355 (4위)	18,381 (4위)	17,803 (3위)
정수기대여	8,784 (9위)	15,009 (5위)	15,018 (4위)
국외여행	12,842 (7위)	13,591 (6위)	12,799 (6위)
초고속인터넷	13,196 (6위)	13,429 (7위)	13,745 (5위)

\* 피해 사유 : 배터리 하자, 가입시 안내 부족으로 야기된 위약금 부담, 단말기 지원금 및 할인 혜택 미지급, 인터넷 계약 해지 처리 지연 등 다수의 이용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사안들

- 이용자는 피해구제 등을 위해 이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하면서 많은 시간·비용을 소모

< 최근 3년('14년~'16년)간 통신사 소송 현황 >

구분	SKT	KT	LGU+
소송건수(건)	311	94	363

-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경과되면서 이용자 차별해소, 가격·기능의 정상화, 통신비 경감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가 더욱 은밀해지고 지능화 되어 법 준수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

## □ 갈등요인

- 복잡·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권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와 경쟁 정책의 조화 필요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등)는 이용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 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의 한계가 존재
- 통신사업자 중심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우려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채널의 법규위반 증가

##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제는 강화 하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
- 통신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이외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신분쟁 조정제도 도입
  - ※ 인터넷기업협회는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센터 운영
- 방송통신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및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개발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유도
- 일반사이트, 웹카페 등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 강화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II-1-①)**

**□ 추진배경(목적)**

-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발생시 기존 재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되,
- 최근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등과 같이 통신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 제도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통신서비스 계약은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므로 1인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며, 피해발생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는 데는 절차가 불편하고 상당기간 소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설명 미고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도입
- 분쟁조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통신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또한 통신서비스와 결합되어 판매하는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법에 리콜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어 일반법인 제품안전기본법상의 리콜규정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

-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7.1.1~)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 문제 우려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통신분쟁(재정)에 대하여는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분쟁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재정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도출
- 증가하는 결합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획정방안 및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에 대한 판단지표를 마련하고 결합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결합판매를 둘러싼 영향 분석
-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의 세부기준을 고시하여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의 법준수 행위 유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3~6월	
2/4분기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 개최	5월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평가 실시	5~11월	
3/4분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마련	8월	
4/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12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 개최	12월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보고	12월	
연중	재정사건 접수 및 처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

- 통신분쟁 조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정보·교섭 능력의 격차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용자 권익 증진

○ 이해관계자 : 통신사업자

- 이용자 중심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게 되면 무분별한 분쟁 조정으로 인해 통신사의 영업활동이 방해되고 기업비용이 증가한다며 도입을 반대

-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 기업측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고,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임

□ 기대효과

○ 분쟁조정은 소송이나 재정보다 절차가 간소화하고, 통신 기술에 대한 전문적 분쟁해결이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소송에 비해 시간·비용 감소, 실질적인 입증부담 완화 등 효율적인 피해 구제

- 더불어 동 제도 마련만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제도정비를 유도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

○ 제조사·이통사·유통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이동통신 리콜의 법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해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분쟁조정 제도 마련	-	-	신규	100%	동 과제는 법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통사의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으며, 제조사,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법 개정 과정에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되므로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상정	위원회 상정 안건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II-1-②)

□ 추진배경 (목적)

-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를 통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이익 보호 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 관행과 함께,
  - 별정·부가통신 서비스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신유형의 금지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차별행위, 부당한 조건·제한부과 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중소유통망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롭게 금지행위로 포함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 환경조성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업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실태점검	3~6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정보 개선방안 마련	4~5월	
2/4분기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실태점검	6~9월	
3/4분기	명의로용 피해방지 통신요금 연체통지서비스 구축·운영	7월~10월	
	인터넷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8~11월	
4/4분기	유선분야 통신4사-중소유통점 상생방안 마련	10월	
	결합상품 시장 자율규제 구축·운영 방안 마련	11월	
	방송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11~12월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적 이익 제공기준(안) 마련	12월	
연중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용자 : 중요사항 미·거짓고지, 부당한 해지제한, 이용자차별 등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 전기통신사업자 :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

□ 기대효과

- 신유형의 금지행위 점검 등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구분	'16	'17
공정경쟁환경 조성(1-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45.33	40.1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56	16.91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1.16	0.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유선시장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59.8%	91.9%	82%	82%	결합상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전년 대비 불공정행위 개선 결과로 보아 성과지표 반영	(유선시장 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유선시장 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총 건수)*100	내부자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율목 : 경쟁지급 수준 및 허위 과장 광고 수준	

\* '14년 실적치는 10월~12월 평균실적치임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으나, 법준수 취약지역의 위법행위 발생 및 지원금 상한제 일몰 도래에 따른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판매점 사전 승낙제 정비 및 조사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20% 요금할인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20%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부분 실태점검 및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
-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일반 사이트, 웹카페 등)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 대형 유통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사와 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통사와 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3월	
2/4분기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실태점검	6~9월	
3/4분기	20% 요금할인제 가입안내 부분 실태점검	7~10월	
	조사거부·방해 제재 수준 강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	9월	
4/4분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11월	
	판매점 사전 승낙제 정비	12월	
연중	단말기유통법 준수 취약지역 실태점검	1~12월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 모니터링 실시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20% 요금할인제 가입 활성화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이동통신사업자 :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이해관계자

-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이동통신사업자간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20% 요금할인제 가입 활성화로 이용자 권익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구분	'16	'17
공정경쟁환경 조성(1-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45.33	40.1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56	16.91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7.78	1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율		94%	95%	96%	이용자 차별금지 및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세부 항목별 평균 준수율을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 결과로 보아 성과지표로 선정 ※ 전년대비 1% 상향설정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 * 단말기유통법 세부항목 : 지원금 공시제시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④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Ⅱ-1-④)

□ 추진배경 (목적)

- IoT,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선제적 정보제공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령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방법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지자체 및 장애인협회, 다문화가정센터 등 유관기관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 계층별 교육 콘텐츠 제작, 강사단 육성을 통한 교육 강화

- 금감원, 이통사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관계 기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 정보 제공
- 편리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을 지정·운영하여 이용자 참여형 캠페인 전개
- 포털사업자 본 평가, 앱마켓 사업자 시범평가 등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 인터넷 상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 부담,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방법, 앱 데이터 소모량 측정 등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 개선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기관 협의	2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사업자 설명회	2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3월	
2/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4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지표 개선	5월	
3/4분기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금지행위 실태점검	6~8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8월	
	유료부가서비스 이용자이의 침해행위 실태점검	9월	
4/4분기	방송통신 피해예방 강사단 보수 교육 및 간담회	9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 실시	10월	
	해외 데이터 로밍 제도개선	12월	
연중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종합 및 공개	12월	
	앱 데이터 소모량 측정	12월	
연중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1~12월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보이스피싱)예방 안내 정보제공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장·노령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
- 이해관계자 :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장·노령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이용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16	'17
공정경쟁환경 조성(1-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 조성(2141)	일반회계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1)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2.38	13.50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5.99	5.49
-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체계 운영		2.32	내역사업통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도(%)	-	-	12.5	14.0%	'16년도 교육 역량향상을 12.5% 대비 12% 향상한 14.0%로 설정	[(계층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점수] x 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1) 주요 내용

□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 자율규제 체계 도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촉진
-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활발해 짐에 따라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국제인증제 도입을 통해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 유출사고 빈발 분야, 민원 다발 분야 등에 개인정보 취약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대국민 캠페인 전개, 불법 유해정보 차단 강화 등을 통해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운영 확대, 신종 불법스팸 차단대응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S/W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역기능 대응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국내의 웹사이트 주민번호 일평균 노출 페이지 수	68.9	26.6	13.1	13.1	국외 추가 등 지표 확대와 연계하여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16년도 성과가 초과하여 재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17년 목표치를 '16년도 달성 수준에서 다소 하향조정	$(a_1 + \dots + a_n) + (b_1 + \dots + b_n)$ $n$ n=점검일수 ai(국내), bi(국외)=점검일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 수	검색엔진에 노출된 주민번호 점검 (전문S/W 활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 인터파크 2500만명 ('16.5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97만명('17.3월) 등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증가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신기술 발달에 따라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 확산 등 사회문제 대두
- 기존의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신종스팸(웹팩스, 음성스팸 등) 지속 증가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가로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역기능 이슈 발생에 따른 인터넷윤리교육 확대 필요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를 미준수하는 사례 발생
-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위치정보 규제가 사업자들의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홍보 방안 마련 필요

##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 실시
- 개인·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
- 인터넷 윤리교육 대상을 유아·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체감형 교육 실시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Ⅰ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Ⅱ-2-①)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인식제고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위치정보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개인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지문·홍채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생체정보 관련 개념 명확화 및 보호조치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
  -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 제고 및 사물인터넷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의 조화를 달성하도록 동의 제도·국외이전 제도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제도의 실질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해 신규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 도입 추진
-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제도 운영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추진 및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활성화 지원
- (국제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글로벌 인증체계인 APEC CBPR 심사기준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
- 유럽 진출 국내 기업의 EU 개인정보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평가(방법 분야) 관련 활동 추진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허가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제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공모전을 통해 우수 위치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연계 유도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기술, 경영 분야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긴급구조 강화) Wi-Fi 위치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해 실내·외 Wi-Fi 신호 DB의 확대 구축
- 위치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조 전달체계 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오류 개선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	3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3월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3월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한 온 오프라인 컨설팅	3~12월	
	실내·외 Wi-Fi AP DB구축	3~12월	
	위치정보 산업 관련 동향 및 실태조사	3~12월	
2/4분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4~6월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4~12월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위치정보보호 교육 실시	4~12월	
	생체정보(바이오정보) 보호방안 마련	4~12월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 수준 제고 교육	5~12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홍보·교육	6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제정	6월	
3/4분기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입상팀 대상 교육 특히 지원 등 추진	7~12월	
	인터넷 내정보 지키미 캠페인 추진	8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실시	9월	
4/4분기	클라우드 소싱 기반 WiFi AP DB 갱신 테스트(ETRI)	10월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실시	10~12월	
	실내·외 Wi-Fi AP DB 신뢰도 검증	11~12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정책 마련	12월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12월	
	이용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마련	12월	
	CBPR 심사기준 마련 및 인증기관 신청	12월	
	EU 적정성평가(방법 분야) 보고서 마련 및 대외 설명	12월	
연중	중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애로사항 지원	1~12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리	1~12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운영	1~12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운영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 글로벌 인증체계 가입 추진을 통한 해외 진출 용이성 제고 및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 절감 등 국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국제경쟁력 강화
- 예비·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자 : 공모전을 통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 관련 동향 정보 제공
- 일반국민(긴급구조 신청자) : 긴급구조시 요구자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 지원

○ 이해관계집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 확대에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규 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 절감
- 온라인 맞춤형광고 및 앱 접근권한, 생체정보 등 신규 ICT 이슈 관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 예방
- 개인정보의 자율관리 환경 조성 및 관련 사업자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이용환경의 안전성 강화
- Wi-Fi를 활용한 위치측위 긴급구조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가 안전망 제고 효과 제고
-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위치정보 산업의 창조적 선순환 체계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16	'17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1-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50.41	128.47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89.99	92.09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6.0	5.25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3251)	방발기금	38.38	87.66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17.38	15.08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0	20.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유지 사업자 수	27	41	46	51개	전년 실적(46개사) 대비 10%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 사업자)	기존 PIMS 인증 유지 기업 수 + 당해년 PIMS 인증 신규 획득사업자 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 및 신규 획득한 사업자 수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신규	75점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연계 난이도와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만족도 × 0.5) + 플랫폼 수요자 (경찰청 국민안전처) 만족도 × 0.5)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II-2-②)

□ 추진배경 (목적)

- 정보통신서비스분야 개인정보 취급기업·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고 빈발 분야(쇼핑몰 등), 민원 다발 분야(초고속인터넷 영업점 등)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 점검
- 개정 정보통신망법(16.3.22.)에 따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모니터링 환경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위치정보 불법 활용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건전한 위치정보 활용 기반 마련
  - 위치정보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준수 등 실태점검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 운영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글을 신속히 탐지·삭제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조사체계 강화를 위한 조사 전담 조직인력 확대	2월	
2/4분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육	4월~6월	
	초고속인터넷·통신사 영업점 등 민원다발 분야 실태점검	4월~6월	
3/4분기	통신·쇼핑 분야 자율점검 시범운영	5월~8월	
	인터넷 쇼핑몰 등 유휴 취약 분야 실태점검	7월~9월	
4/4분기	모니터링 미개선 주요 사업자 실태점검	7월~10월	
	'17년 시정명령 이행점검	12월	
	업종별 자율규제 행동강령 및 체크리스트 마련	12월	
연중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적절성 여부 실태점검	12월	
	언론보도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12월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글 탐지 및 삭제	1~12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1~12월	
	검정통보, 민원신고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이해관계집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보호조치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투자 확대에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규 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및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 개인정보 유·노출 신속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 3차 피해 위험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사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불법 활용 근절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16	'17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1-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50.41	128.47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89.99	92.09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6.0	5.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삭제율	85.5	85.9	94.8	88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율 88%를 기준으로 매년 1%p 상승을 목표로 설정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건수 / 탐지건수)*100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II-2-③)

□ 추진배경 (목적)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윤리포털 통합구축 등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윤리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S/W 보급 확대를 통한 역기능 대응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포털 사업자의 임시조치가 증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추진
  - 유아, 청소년 멘토링을 담당하는 교사·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 국민(유아~성인)에 대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 ※ 바른인터넷유아학교(유아), 한국인터넷드림단(초·중·고),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자녀/학부모), 성인 인터넷윤리교육(대학생·군장병 등) 및 인형극, 뮤지컬공연, 소통과 실천교육 등
-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 국민이 직접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 및 확대하고, 참여형 실천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 ※ 통합포털 구축 및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인터넷 윤리대전 등 개최

-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수혜자 접점형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지역별 대학생 서포터즈(대학생드림단)를 모집하여 인터넷윤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음성스팸 차단 시스템에 육성 전화광고 문자변환·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음성스팸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상시 대응 불법스팸 대응 강화
- 웹팩스 수신자가 팩스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 3사(SKB, KT, LGU+) 등 웹팩스 수신 프로그램에 간편신고 기능 탑재
- 지속적인 스팸유통 현황 공개(연 2회)를 통해 통신사업자 등의 자발적 스팸감축을 유도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스팸에 대한 사업자의 스팸방지 법 의무사항 점검 강화
- 사이버 안심존 등 음란물 차단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S/W 보급 확대
-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기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인터넷윤리교육 지원 대상학교 모집 및 선정	1월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운영	3~12월	
	'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2/4분기	전화권유판매자 법 준수여부 실태 점검 및 계도	3월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추진	4~12월	
	인터넷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4월	
3/4분기	'17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5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개최	9월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유아·초등) 개최	9월	
4/4분기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인터넷윤리 통합포털서비스 구축	10월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청소년) 개최	10월	
	인터넷 윤리대전 시상식 개최	11월	
	인터넷 윤리 교수 학습 지도안 공모대회 시상	11월	
	'17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개선 입법지원 방안 마련	11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 구축	12월	
	주요 사업자 대상 웹팩스 간편신고 기능 탑재	12월	
자율규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17개 시·도 교육청,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 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기대효과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범국민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전국민의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획기적 제고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도박·불법대출 등의 스팸 유통 방지, 불필요한 정신적 피해 예방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
- 음란물 차단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스마트폰 역기능 해소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16	'17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1-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70.52	150.41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3)		29.29	0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304)		25.13	29.63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3251)		26.28	38.38
▪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지원활동강화(307)		6.0	42.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산규	86.9점	· 정책환경 변화(미래부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사업의 방통위로 일원화)에 따른 교육대상 확대(유·초등 → 유·초등, 중·고생, 성인 등) 방통위·미래부 '16년도 인터넷교육 윤리 만족도 실적 85.5점 (방통위 : 92.7점, 미래부 : 78.2점의 평균값)에 연도별 평균 변화추이 0.9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0.5점을 높인 1.4점을 반영하여 86.9점으로 상향조정	윤리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 하향지표임	0.94	0.70	0.67	0.66	과거추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13~'17년간 연평균 감소율 6%*를 적용하여 목표설정 * [(17년 목표 0.66/13년 실적 0.85) <sup>1/4</sup> ]-1	외부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이메일 각각 1,500명의 이용자가 수신하는 스팸량을 측정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연 2회 측정)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의 공적책임은 방송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되어야 하며,
  - 다매체·다채널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상업적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방송의 품격과 공적책임 유지는 더욱 필요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이 여전하므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필요
- 스마트 시대 미디어는 지식습득, 문화향유, 관계망 형성, 소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중요성은 증대되나 세대 간, 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는 양상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필요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16년 개선된 외주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여 콘텐츠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한류 콘텐츠의 중국 시장 위축,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에 따른 관련 법적 분쟁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는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거나 높은 광고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N스크린(스마트미디어)을 통한 방송시청 증가, 방송시장에서의 OTT 서비스 이용 증가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 그간의 성과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 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 및 공익성 스포츠 제작·송출 등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유도

○ 장애인방송 의무화로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까지 장애인방송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TV 보급 등을 통해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을 제고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및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및 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방송광고 법규 준수를 증가

※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 '14년 74.2% → '15년 74.8% → '16년 79.8%

○ 광고총량제 시행(방송법 시행령 개정, '15.9월), 협찬고지 시간·횟수 등 형식규제 완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6.3월), 가상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방송법 시행령 개정, '16.5월)등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구분	제작지원			중소기업 성장률(%)	방송광고 집행액(억원)
	TV광고	라디오광고	계		
2015년	32	78	110	4.3	82.3
2016년	45	40	85	10.7	128.8

#### ◇ 주요 추진 내용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심의 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유도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해 점검 또는 조사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간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후규제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

○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율적 법준수 유도

○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협력 강화를 통한 한류 저변 확대 추진

○ 지상파·유료방송 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외주사 제작환경 개선을 통한 콘텐츠 제작지원 확충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의 50%(TV 5천만원, 라디오 3.5백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방송광고 활용을 위해 컨설팅 제공

○ 스마트미디어로 변화하는 매체이용행태에 적합한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의 공공성 제고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법규위반사항 개선 등을 통해 공정 경쟁 및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복리 증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6	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②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①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율 ②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①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③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①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성과목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시청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시청자 권익 증진, 정서 함양을 위해 방송 품격 제고 추진
- 장애인의 방송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방송접근 환경 개선 추진
-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규위반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22.9	35.8	45.8	55%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 증가율이 8.6%p임에도 불구하고 '16년 실적 대비 9.2%p 상승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지자체 업무협력 및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급 확대 추진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 × 100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통계자료, '17년도 시청각장애인 TV 보급 현황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자극적인 방송·막말 방송 등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 증대

-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 논란 및 종합편성 등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에 따른 막말·저품격 방송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 존재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전체 누적 보급률은 29%대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유료방송 시장에서 방송통신결합서비스 등을 통해 IPTV 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케이블 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정체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간 가입자 유지·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방송 콘텐츠 제공 거래 관련 콘텐츠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갈등 및 경쟁 가속화
- 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발생 가능성 상존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위반에 대한 기관차원의 사후규제 강화와 함께 방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갈등요인

- 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방송내용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과도한 심의제재는 방송프로그램 수준 제고에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

- 장애인방송의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방송사 추가재원 확보 어려움 및 지원 요구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보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수요자 발굴 등 보급 절차가 어려움
- 홈쇼핑PP 금지행위 조사의 경우 납품업체의 면담 회피와 더불어 홈쇼핑 업무의 일부 절차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업무협력 강화, 맞춤형 홍보 및 신청 편의 제공 등 추진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지원 및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방안 추진
- 저품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유도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결과 전문 검증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세부기준의 개선 방향 논의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통해 규제 신뢰성을 제고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III-1-①)**

**□ 추진배경**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 여전
-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과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특집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유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후심의 및 제재처분	연중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운영	연중	
	방송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연중	
	방송심의사례집 발간·배포	'17.3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17.3월	
2/4분기	방송언어 위반 중점심의 실시(상반기)	'17.4월	
	방송언어실태 조사결과 발간·배포	'17.4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17.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선정(상반기)	'17.6월	
3/4분기	방송언어 위반 중점심의 실시(하반기)	'17.8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17.10월	
	방송언어문화 개선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17.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선정(하반기)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 품격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 시청자 : 막말·선정성 등이 배제된 고품격 방송프로그램을 시청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내용 규제 기관
- 방송사업자 : 방송제작 당사자 및 내용규제 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청소년(시청자) 보호 등 관련 기관

□ 기대효과

- 방송언어 문화 개선, 방송사 자율규제 유도 및 사후심의·제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방송기반구축(II-2-일반재정④)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발전기금	290.1	302.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310)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4.3	2.9
▪ 방송분야 시상(3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61.6	61.8	62.6	63점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점이 62.0점임을 감안하여 '17년에 목표 점수를 63점으로 설정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 3개 항목 : ①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방송관련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②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 □ 추진배경

- 미디어 융합, 신규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필요
- 시·청각장애인 등이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 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이념 구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
  -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 등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소외가 더 심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TV 보급을 확대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제공실적 평가, 의무사업자 지정·공표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 운영, 만족도 조사 등 장애인방송 제도 정착 및 품질 향상 추진
-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방송의 영상을 생성·제거,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추진

- 시각장애인에게 채널전환, 프로그램명, TV메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서비스 시범서비스 실시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협약 체결	'17.1월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입찰공고	'17.2~3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 선정	'17.3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관련 지자체 업무협약	'17.3월	
2/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선정	'17.4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17.5~8월	
	'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17.4~8월	
3/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자 선정·보급	'17.7~12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시범방송 환경구축 및 실시	'17.7~12월	
4/4분기	'18년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선정	'17.10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7.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각 장애인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 □ 기대효과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복지 강화
- 장애인방송 의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권익 향상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시청 편의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시청자권익증진(II-2-일반재정②)				
①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94.44	95.26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308)			94.44	95.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신규	74.7	75.9	77.6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2.2%)을 적용하여 '16년 대비 2.2% 상승한 77.6점을 설정 -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및 지원의 한계로 만족도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상향 설정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자막방송 만족도 × 0.87) + (수어방송 만족도 × 0.04) + (화면해설방송 만족도 × 0.09)]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권역별·장애등급별 인구비례할당 설문조사 (전화, 대면 등)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III-1-③)

□ 추진배경

- 방송시장 성장률 하락, 유료방송 가입자 포화 등 방송시장 정체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 등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
  - 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홈쇼핑PP-납품사업자간,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시정하여 사업자간 거래의 공정성 증진에 기여
-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재송신료), PP(채널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PP(송출 수수료) 간 계약조건 등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
- 방송분쟁조정,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 구축
-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자 제도 등을 통해 방송광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건수는 '14년 이후 감소추세('14년 130건 → '15년 101건 → '16년 90건)에 있으나,

- '15.9월 규제가 완화된 가상광고\*'의 위반건수는 증가('15년 16건 → '16년 33건) 하였고, '16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된 협찬 고지의 위반건수가 33건에 달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

\* 가상광고 허용범위 확대('15.9) : (기존)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  
(변경) 스포츠 중계 + 오락 +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추가)

- 이에,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료방송사가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방송상품을 판매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계약 관련 개별가입자 동의, 계약내용 고지 등에 대한 준수사항 조사 및 시정
- 유료방송사에 접수되는 민원자료를 취합·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발 민원유형을 선별하여 조사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프로그램 거래, 채널 제공 등)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개선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편성 변경·취소, 납품업자와의 수익 배분 관련 편성불이익 등 방송법 금지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 조사 결과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추진

- 방송광고·협찬고지의 대한 자발적인 사업자 법규 준수 유도
  -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수시교육 실시, 설명회 개최 및 법규 위반사례 공개(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의 규제 예측성 제고 및 법규 준수 장려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매월) 및 집중 모니터링(상·하반기, 필요시 수시)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전문 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재검증을 통한 규제의 신뢰성 제고

< 정기 모니터링 > : 매월 전월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및 광고·협찬고지 종류별 형식 규제(크기, 횟수, 고지여부, 시점 등) 준수여부 등 조사

< 집중 모니터링 > : 연간 2회(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필요시 수시)

- '17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위반건수가 33건에 달하는 협찬고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 집중모니터링 실시

\* 시청자 민원이 많은 사항, 법규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및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불합리한 사후 규제체계 정비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처분 기준으로 정비하여 사업자의 규제예측성 제고 및 법 준수 의지 확보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송사업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17.3월	
	유료방송사 민원분석 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17.3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결과 전문 검증단 구성·운영	'17.3월~12월	
2/4분기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17.6월	
	홈쇼핑 PP 금지행위 사실조사	'17.6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	'17.5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	'17.6월	
3/4분기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7.7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	'17.7월	
	유료방송사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7.8월	
4/4분기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7.10월	
	민원민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17.10월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17.11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	'17.11월	
	사후 규제체계 정비(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17.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4회)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월별 분석보고서 작성	'17.1월~12월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방송통신 이용자

-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해 정상적 거래 및 영업의 혜택을 누리는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

- 재산상황 자료를 정책수립, 사업계획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 등

- 시청자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 이해관계자

- 방송법, IPTV법, 미디어랩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분쟁조정 및 재산상황 제출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

- 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형식규제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제작 자율성을 제한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축소시킬 우려

□ 기대효과

-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방송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고 유료방송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개선 및 근절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를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사전적 예방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2-일반재정②)			
①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15.2	15.6
		(556)	(579)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1)		15.2	1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율			100	100%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방송 시장 경쟁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전년 실적 대비(16년 3건) 증가한 4건을 개선계획으로 설정하고, 이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실태 점검 이후 제도개선 및 업무절차 개선 등 건수 + 개선계획(4건)	공문, 사실조사 보고서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신규		79.8	79.8%	최근 3년간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은 76.2% 이하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16년도 실적치와 동일한 79.8%를 '17년도 목표치로 설정 - '14년 준수율 74.2% - '15년 준수율 74.8% - '16년 준수율 79.8%  ※ '16년도 법규 준수율이 상승한 이유는 '15.9월에 도입된 광고총량제와 관련하여 사업자 계도기간('15.10~12월)동안 처분을 유예하였기 때문임 (모니터링부터 사업자 계재까지는 총 3~4개월 소요되므로 처분유예에 따라 '16년 초 제재처분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	방송사업자 305개 채널수 모니터링 결과 [[전체 채널수 - (1회 위반 방송채널수 x 1.0) + (2회 위반 방송채널수 x 1.5) + (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 x 2.0) + (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 x 3.0)] / 전체 채널수] x 100	방통위 행정처분 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성과목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지상파·유료방송의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방송사별 외주편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체결한 MOU 이행점검 및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외주거래 현황 파악을 추진
  - 방송콘텐츠 분쟁관련 법률자문, 해외국가 콘텐츠 현황조사,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유도
-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우수 녹색 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을 통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기록 조사방안 개발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신규	60.7%	방송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관리과제별 성과 지표로 구성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 0.5)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 0.2) +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0.3)]	외부기관자료 및 사업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제작인력 유출과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의 광고시장 재편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정체되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판매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지속적 성장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 시장은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는 효과적이거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용 곤란
  -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도 도입
-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69조의2)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 IPTV방송사업자의 성장 등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매체이용행태 급변

## □ 갈등요인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조달과 수익배분의 다양한 방식 등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
-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증가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방송콘텐츠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신시장 개척 필요성 증대
-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상파·유료방송 광고 증가로 시청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 가능
- 최근 1년 이내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일부로 제한

\* 산업부·중기청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고정형 TV, PC, 스마트폰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시간을 측정하여 방송매체 이용행태의 변화를 시청점유율 조사에 반영
-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VOD, PC·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 갈등관리계획

-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방송사별 외주편성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체결한

MOU 이행점검 및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외주거래 현황 파악 추진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모니터링 강화 등 불합리한 사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한 시청권 침해 최소화 방안 모색
- 실질적인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사 제작사 등의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수립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 사업의 목표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임을 적극 홍보하고,
  - 아울러 미디어랩의 송출비 할인제도를 소개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방안 검토 등 갈등요인 해소 추진

## (4) 기타

### □ 광고매체시장 환경 변화

- 국내 총광고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모바일·인터넷으로의 광고시장 이동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특히 지상파 광고시장 급감
  - 반면 주요콘텐츠의 회당 제작비는 급증함에 따라 실질제작비 축소 등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악화

광고 매출액	총광고시장	2010년 8.6조원 → 2016년 10.9조원
	방송광고 시장	2010년 3.3조원 → 2016년 3.6조원
	지상파방송광고	2010년 2.2조원 → 2016년 1.6조원
	유료방송(종편·tvN 등)	2010년 1.1조원 → 2016년 1.9조원
	모바일·인터넷	2010년 1.5조원 → 2016년 3.4조원
제작비	결합판매	2012년 2,500억원 → 2016년 1,900억원
	주요 드라마 회당제작비	2012년 약 4억원 → 2016년 약 8억원 ※ 해당년도 주요 드라마 4~5편 평균 제작비
	지상파 실질제작비	2012년 9,900억원 → 2015년 8,600억원
	유료방송 실질제작비	2012년 1.4조원 → 2015년 1.2조원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 (개요) 7가지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이 비대칭적으로 규정

\*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분류

○ (광고총량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규제를 적용하되 총량 내에서는 자유로운 광고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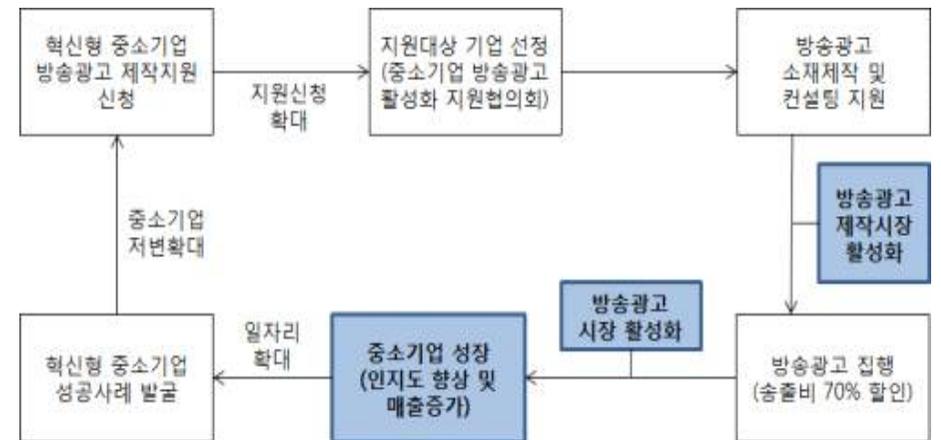
※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중간광고 시간은 편성시간별 총량규제에 포함

○ (중간광고) 지상파는 원칙적으로 중간광고가 금지, 유료방송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둠

유형	정의	지상파	유료방송
광고 총량제	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제도	편성시간당 평균 15/100, 최대 18/100	편성시간당 평균 17/100, 최대 20/100
방송프로그램 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TV의 경우 편성시간당 최대 15/100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화면 1/4 이내	화면 1/4 이내

유형	정의	지상파	유료방송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73년 오일쇼크 이후 과소비 방지 목적으로 금지)	금지 (단,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허용)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허용횟수 다름,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table border="1"> <tr> <th>프로그램 길이</th> <th>허용횟수</th> </tr> <tr> <td>45-60분</td> <td>1회 이내</td> </tr> <tr> <td>60-90분</td> <td>2회 이내</td> </tr> <tr> <td>90-120분</td> <td>3회 이내</td> </tr> <tr> <td>120-150분</td> <td>4회 이내</td> </tr> <tr> <td>150-180분</td> <td>5회 이내</td> </tr> <tr> <td>180분-</td> <td>6회 이내</td> </tr> </table>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음성으로 고지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오락·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오락과 교양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도



□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개요

○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의거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

- ※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에 반영
- ※ 시청점유율 :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KBS)는 적용 제외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Ⅲ-2-①)

□ 추진배경

○ 외주제도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외주제작 시장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 구두계약 등 불공정 거래관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순수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표준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계약서의 사용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외주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외주제작 제도개선)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15.6.22 방송법, '16.5.27 시행령에 따라 순수 외주비율과 인정기준을 개선('16.10.26, 고시), 외주제작사를 분쟁조정 대상에 추가('16.1.27 방송법) 및 간접광고 허용('16.7.28 시행령, '16.9.27 고시)

-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서면계약 관행 확립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모바일·인터넷으로 광고시장 중심이 이동하는 등에 따라 방송 광고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제작비 급증에 따라 방송사의 제작 여건 악화

방송광고 시장	2010년 3.3조원 → 2016년 3.6조원
지상파	2010년 2.2조원 → 2016년 1.6조원
유료방송(종편·tvN 등)	2010년 1.1조원 → 2016년 1.9조원
모바일·인터넷	2010년 1.5조원 → 2016년 3.4조원
주요 드라마 회당제작비	2012년 약 4억원 → 2016년 약 8억원 ※ 해당년도 주요 드라마 4~5편 평균 제작비

- 고품질 콘텐츠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재원 확충 필요
- 한류 방송콘텐츠는 관련 상품 매출 증대, 관광활성화, 국가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중국 시장 위축,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에 따른 관련 법적 분쟁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정된('16.10.26)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편성고시 제9조의2)\*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운영하여 방송사별 외주 편성규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

###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 ◆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방송프로그램
  - (기존 요건) 외주제작사가 ①작가계약 체결, ②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③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제작재원의 30%이상 조달, ⑤제작비 집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 중 3가지 이상 만족
  - (선택적 수익배분 요건) ①방송권 수익의 30%이상, ②전송권 수익의 30%이상, ③복제·배포권 수익의 30%이상, ④공연권 수익의 30%이상, 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수익의 30%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

- 외주사의 역량제고 및 방송콘텐츠 산업발전 방안 논의를 통한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출연료 지급보증, 간접광고 수익 배분 등을 내용으로 체결한 MOU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 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 거래관행 등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현황 파악 등을 추진

- 미디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광고총량제 이후 추가적 광고제도 개선에 따른 매체별 광고매출 증감과 매체간 이동효과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및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비대칭규제 유지
- 우수 중소기업의 방송 프로그램 내 상품 PPL을 통해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 방안 마련

- 방송콘텐츠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방송사 및 제작사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방송포맷 관련 '해외표절 사례집' 발간

- 한류콘텐츠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의 방송규제·방송사업자·공동제작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결과를 분석·공유하는 세미나 개최

- 방송콘텐츠 분야 MOU 체결, 국제 컨퍼런스 참석·발제,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이슬람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협력 강화 추진

※ 공동제작 협정 필요성·유용성 및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항목·문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운영

- 한·베트남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한류콘텐츠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태국 방송콘텐츠 분야 MoU 체결	'17.2월	
	한·터키 방송콘텐츠 분야 MoU 체결	'17.2월	
	한·인니 방송콘텐츠 분야 MoU 체결	'17.2월	
	한·인니 1차 공동연구반 회의	'17.2월	
	OIC IBRAF 참석 및 공동제작 주제 발제	'17.2월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 운영	'17.3월~	
2/4분기	방송광고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17.4월~	
	외주제작 현황 실태점검 등 관련 정책연구 추진	'17.5월~	
	한·베트남 4차 공동연구반 회의	'17.6월	
	지상파방송사·외주제작사 MOU 이행점검 실시	'17.6월	
3/4분기	콘텐츠 제작산업 발전방안 연구반 운영	'17.7월~	
	외주제작·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17.8월~	
	방송콘텐츠 제작산업 발전방안 연구반 운영	'17.9월~	
4/4분기	한·태국 1차 공동연구반 회의	'17.9월	
	외주제작·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17.10월~	
	해외방송콘텐츠 현황 조사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	'17.11월	
	해외표절 사례집 발간	'17.11월	
	방송광고 제도개선 효과분석 정책연구	'17.11월	
	한·베트남 5차 공동연구반 회의	'17.11월	
	해외표절 사례집 발간	'17.12월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17.12월	
연중	법률자문단 운영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관련 국내연구반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외주제작사 : 개정된 외주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지상파 방송사와 체결한 MOU점검 등 불공정 개선 노력 파악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및 해외진출 확대
- 방송사, 광고주 :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통해 광고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

○ 이해관계집단

- 외주제작사, 방송사 :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계약 당사자간 지속적인 공정성 개선노력이 필요
- 유료방송 등 : 방송광고 제도개선 시 유료방송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유료방송 간 비대칭규제 유지
- 시청자 : 방송광고 제도개선 시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한 시청권 침해 최소화 병행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외주제작 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 외주산업 발전방안 논의 등을 통해 개정된 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방송시장 제작환경 조성에 기여

-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되, 지상파·유료방송 간 비대칭규제를 유지하여 매체균형발전에 기여
-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 법률자문, 방송표절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소규모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법률 분쟁 대응능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신규	70%	방송사-외주제작사간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도입률 80%를 만점으로 환산 - '17년은 시행 1차년도임에도 도입률 80%로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외주제작 제도개선, 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 측정 - 처음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임을 감안하여 80%를 만점으로 환산	$(\text{표준계약서 도입률} \times 0.7) + (\text{만족도}^{**} \times 0.3)$ * 도입률 : 실태점검 대상 방송사업자 및 외주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도입률 (80% 이상 시 100점 기준)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방송시장 공정거래 이행실태 점검결과 (하반기 1회)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서면) 결과 (연 2회)

\* '17년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만족도 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점과 외주제작, 광고제도 등의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17년 만족도 목표치 설정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Ⅲ-2-②)

□ 추진배경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는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거나 높은 광고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방송광고 이외 다양한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소재 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제작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선정하여 TV 54개사, 라디오 40개사 등 총94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 및 맞춤형 윈스톱 컨설팅 제공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17.2월	
	1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17.3월	
	1차 선정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17.3월	'17.7월까지
2/4분기	2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17.4월	
	2차 선정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17.4월	'17.8월까지
	전용홈페이지 구축	'17.6월	'17.8월까지
3/4분기	3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17.7월	
	3차 선정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17.7월	'17.11월까지
	관련 규정 개선	'17.9월	
4/4분기	방송광고 활성화 페어 개최	'17.12월	
	효과평가 실시	'17.12월	'18.2월까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진입이 용이해져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확대 예상

- (방송사) 중소기업이 제작한 광고를 방송을 통해 방영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 예상

○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능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 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1-2-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25.4 (80.02)	30 (80.02)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25.4	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신규	3.77	3.79	4.15점	'15년 효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목표치 산정(매년 5% 증가)	$[(\text{기업인지도 상승}(5\text{점 만점}) \times 0.5) + (\text{매출증가 기여도}(5\text{점 만점}) \times 0.5)]$	방송광고 효과평가 (지원대상기업 설문조사결과)	

### ③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기반구축(Ⅲ-2-③)

#### □ 추진배경

-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규제 제도 시행(방송법 제69조의2)
  - ※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변경승인 심사에 반영
- VOD시청과 PC·스마트폰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젊은 층의 고정형TV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TV시청, VOD시청이 증가하고 있어 시청시간 조사를 통해 젊은 층의 TV시청시간 현황 집계 추진
  - 현행 시청기록 조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VOD와 PC·스마트폰의 시청시간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 자료 활용 한계
  - 조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조사지역, 조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 기간도 늘려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필요
- VOD,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시간 조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청률 조사 분야에서 해외 기술협력 등 산업진흥 도모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방식과 관련, 유선전화RDD(무작위 전화 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기초 조사로 인해 젊은층과 1인가구 등의 비율이 조사패널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모집단 포함률이 떨어진다는 지적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초조사) 전국 20,000 가구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TV시청환경을 가구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
  - 기존 유선전화RDD(무작위 전화 걸기, Random Digit Dialing) 조사방식을 '15년부터 가구방문 면접방식으로 변경

· 유선전화RDD는 집전화 없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모집단 포함률이 낮으며, 1~2인 가구와 젊은 층 가구의 접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가구방문 면접방식은 주소를 기반으로 응답자를 추출하므로 모집단 포함률이 제고되며, 1~2인 가구와 저연령 가구도 접촉이 늘어날 수 있음

※ 고정형TV의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와 N스크린(PC·스마트폰)시청기록 산출 조사의 기초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각 조사결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

- (TV시청점유율 본조사)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의 고정형TV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채널 시청시간 측정
  - ※ '15년부터 고정형TV 비실시간(VOD) 시청조사(3,000가구)
- ('16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16년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에 반영 및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시청점유율 조사 측정기술 사전평가 실시) '통합시청점유율 전문가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패널의 대표성, 이상 시청현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

-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PC,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TV 방송채널 및 비실시간(VOD) TV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조사
- (시청기록 상시검증체계 구축) '시청기록 검증연구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채널의 대표성, 이상 시청현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
-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 운영) VOD, PC·스마트폰 시청 시간 조사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민관협의회 :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PP 등 방송사업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 시청률조사회사, 광고주협회 등 약 30여명('14. 7. 구성)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17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시작	'17.1월	
	2017년도 고정형 시청기록조사 용역 사전 공고	'17.2월	
	2017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용역 사전 공고	'17.2월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자료 접수	'17.3월	
	2017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용역 본공고 및 BMT 실시	'17.3월	
	2017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7.3월	
2/4분기	2017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시작	'17.4월	
	2017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시작	'17.6월	
	2016년도 매체교환율 산정결과 도출	'17.6월	
	2016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도출	'17.6월	
3/4분기	2017년도 TV·신문 이용행태조사(1차)	'17.6월	
	2016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17.7월	
4/4분기	2017년도 TV·신문 이용행태조사(2차)	'17.10월	
	2017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종료	'17.10월	
	시청점유율조사 개선방안 마련	'17.12월	
	2017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종료	'17.12월	
	2017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종료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
  - 광고주 : 연령·세대별로 VOD나 스마트폰을 통한 TV프로그램 시청현황의 파악이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광고비 집행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결과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의 제한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영향력의 독과점 방지
- VOD와 PC·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를 병행하여 매체이용 행태변화를 시청점유율에 반영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 제고
- 콘텐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어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시청점유율 조사를 통해 시청 현실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광고와 방송산업 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미디어다양성 및 공정경쟁 촉진(II-2-일반재정②)			
①미디어다양성 및 공정경쟁 촉진(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45.7	51.7
▪ 미디어다양성증진(301)		45.7	5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신규	81	83%	- 패널 대표성 향상률 · '16년도 저연령(20~30대) 패널 영입률은 82.7%를 달성하였음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 통합시청점유율 연구반의 개선 요구사항 총 15건에 대해 12건을 이행(80%) 완료하였음  - '17년도 목표치는 '16년도 목표치 (80%) 대비 3%를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측정방법> (조사)패널 대표성 개선율 *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  <측정 산식> [(패널실적치)/(패널 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 (개선사항도출건수)*100] *0.4	전문 조사기관, 전문가연구반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기본 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하고 방통위 정책추진을 지원
- \* 제4기 위원회 구성('17.8.1)이 완료됨에 따라 '17.10월까지 내·외부 검토회의를 통해 새롭게 비전 선정 예정
- 2017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갈등관리, 규제개혁, 정책소통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을 추진

◇ 그간의 성과

- (행정관리) 기관장 중심의 다양한 행사 개최,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성과관리 추진
- \* 2016 근무혁신 우수기관 선정(인사처 주관, '16.11),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1위, 행자부 발표, '16.12)
- (정보보호)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위원회 소관 본인 확인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
- (정책홍보) 방통위 주요 정책 관련 기관장 현장소통 및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활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에 기여
- (국제협력) 방송통신 정책협력 및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프랑스 등 주요 10여 개국의 방송통신 해외 정부기관과 MoU 체결
- (규제개혁) '16년도 방송통신 분야 규제 49건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신장에 기여

## 기 본 방 향

###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와 PC 영상회의 활성화로 기관 내·외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무행정에 구현
- 분쟁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갈등의 사전예방에 주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중무계획 작성·시행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보안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및 통상협상 능력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공직입문·공직가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6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b>	① 정부업무평가 '보통' 이상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① 영상회의 활용건수 ②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①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④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①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율 ② 인재개발 활성화 및 효과성 ③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도
	<b>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홍보 강화	① 정책홍보 만족도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1) 주요 내용

□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 관리를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개최, 영상회의 활성화 지속추진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갈등해소
  - '17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정책고객대표자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연계·운영
  - 단순 시찰, 기관 방문이 아닌 갈등 현장별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사이버 침해 등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안전한국훈련, 중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기업 부담 경감,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질적지표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연내 성공적 이행 추진

□ 일 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 유연근무제, 가정의 날 등을 활성화하여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의 추구
-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공직입문·공직가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정부업무평가결과	미흡	보통	보통	보통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통' 이상 달성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조실 평가발표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방통위는 새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2개의 국정과제와 9개 실천과제를 부여받아 추진중이나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음
- 또한 관련정책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 필요
- 사이버 테러 증가, 북한 도발 등 남북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보안위협이 증가하는 상태임
- 일반 국민들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

#### □ 갈등요인

- 기관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임
- 방송통신 분야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 통일이 어렵고,
  - 이해당사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견 차이가 커서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쉽지 않음
- 최근 사이버 침해 사례 증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보안 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함

- 방송통신 산업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관 기술변화와 시장 상황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규제가 민간의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일·가정의 양립 확산과 공직생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근무행태를 통한 공직자의 역량 강화 필요
-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장애인시설 등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한계 존재
- 작은 조직규모로 인한 직무 부담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관심 부족
- 역량개발을 위한 전직원 대상 집합식 교육훈련은 업무 공백 및 부담 야기

#### □ 갈등관리계획

- 정책단계별 자체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 및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행정역량 강화에 노력
- 정책사항 중 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책을 설명하고 지원하며, 이해당사자가 한정된 분야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설득을 병행하여 갈등 발생의 사전 차단에 주력
-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원회와 산하·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기관장 부서장 등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들로부터 유연근무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이용자 만족도 및 재구매율 제고를 위해 충분한 시장 조사와 품질·가격 비교 등을 실시하여 제품을 구매
- 공직가치 분야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 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관리
- 공직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목표와 연계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동영상, 이러닝,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4) 기타

##### □ 참고자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 2017년도 규제개혁 실적보고서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IV-1-①)

##### □ 추진배경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회의에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통한 영상회의를 확대 적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상·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를 통해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회의 12개를 선정하고, 영상회의 실적을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업무효율화 도모
- 분쟁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등 소통강화와 현장 중심의 갈등해소 노력

- '17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정책고객대표자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연계·운영

- 단순 시찰, 기관 방문이 아닌 갈등 현장별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7년도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7.2월	
	2017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17.3월	
	2017년 상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17.3월	
3/4분기	공공갈등관리 직원교육 실시	'17.7월	
	PC 영상회의 실적 점검	'17.9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17.9월	
4/4분기	국정과제 점검회의	'17.10월	
	2017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17.11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영상회의 건수	-	-	신규	115건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17년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 및 평가지침>에 따라 12종 115회로 설정	영상회의 개최건수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내부자료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60%)	-	-	신규	100%	새정부 출범에 따른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월 점검(12회)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 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내부자료, 국정과제 시스템 관리 실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개방과 공유의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 시키고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 추진배경

- 사이버 테러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제거 및 보호대책 강화
-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수행 및 보안시설로 지정된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총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원조사 실시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 통합방위법 제21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보안업무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6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
- 재난 관계기관 및 주요방송사업자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총무계획 작성·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보안 인식제고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17.2월	
	2017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17.2월	
2/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 작성	'17.5월	
	총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17.5 ~ 11월	
	2017년도 보안감사 실시	'17.5 ~ 7월	
3/4분기	2017년도 을지연습 실시	'17.8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17.9 ~ 10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7.10 ~ 11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7.10~11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7.11 ~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 수혜자

-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와 주요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 이해관계자

- (사이버안전) 정부·공공기관(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본인확인서비스, 민간아이핀 제공기관)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기대효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의 사전 취약점 제거를 통한 정보 보호 조치의 효율성 제고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총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총무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비상대비 및 보안 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6	'17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일반재정③)			
① 행정사무정보화(7131, 308)		0.6	1.0
▪정보보호 수준 강화(7131, 308)		0.6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신규	신규	75.4%	76.5%	'16년 신규 지표로서 목표치는 '16년 실적대비 1.1% 향상된 목표 설정 ※ 방통위는 '15.12월에 6개 업체가 최초로 지정됨	$AL(\%) = (T/5) \times 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 (5점 만점)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신규	신규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서 100% 달성해야하는 당위 지표임 <'17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46개 -보안점검 목표 : 15개	$\{[(\text{자원조사 실시업체} / \text{자원조사대상업체}) \times 0.5] + [(\text{보안점검 기관수} / \text{보안 점검 목표 기관수}) \times 0.5]\} \times 100$	점검 결과보고서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IV-1-③)

□ 추진배경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7년도 업무계획 등에 제시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관리
  - 규제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연내 이행을 위해 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고 개선된 과제는 성과 홍보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	'17.1월	
2/4분기	비용분석 가능한 폐지·완화 규제 발굴	'17.4월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점검	'17.6월	
3/4분기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분석 회의 실시	'17.7월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점검	'17.9월	
4/4분기	규제개혁 성과 홍보,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적립	'17.11월	
	국무조정실에 '17년 규제개혁 실적보고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 부처) 규제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용자 등 국민 불편 해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60	70	80	90%	○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지표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 12개(단위과제 14개)를 선정 -방송통신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임에도 '16년도 이행 목표치 80%보다 10% 상승한 90%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text{이행률}(\%) = \frac{\sum(\text{과제별 이행단위과제 건수} / \text{과제별 단위과제 건수})}{\text{규제개혁 과제 건수}} \times 100$ * 이행여부 판단기준: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 카드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내부자료

④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IV-1-④)

□ 추진배경

○ 근무혁신 활성화로 소속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다양한 인재개발 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공직가치를 갖춘 인재, 직무 전문성 갖춘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인재를 양성

○ 정부기관의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대비 13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시설의 판로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 법정 의무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50%), 기술개발제품(10%),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1%)

- 자체 목표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65%), 기술개발제품(13%),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1.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공직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유연근무제 등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월별 이용실적 점검을 통해 활성화 추진

- 정시 퇴근을 위한 가정의 날(매주 수, 금) 활성화 추진

- 관광주간 및 휴가기간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안내

-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가치 교육, 방송통신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별 전문성 교육, 글로벌 역량 교육을 통해 인재개발 추진
- 공직가치 전문강사 및 민생체험, 봉사활동 등을 활용하여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가치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함양 제고
- 신규 임용자를 위한 기본 직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
- 방송통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초빙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방송통신인으로 갖추어야 직무 전문성 제고
-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 및 자기주도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의 130% 달성을 위해 구매가능 품목 및 해당업체 정보를 발굴·공유하고 구매실적을 수시 점검
- 분야별 전자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 꿈드래 등)을 적극 활용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정부기관 총 구매액(공사, 용역, 물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자체 초과 목표 달성을 위해 65%이상 구매 추진
- (기술개발제품) 연간 중소기업제품(물품) 총 구매액 중 기술개발 제품을 10% 이상 구매하여야 하나, 자체 초과 목표 달성을 위해 13%이상 구매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기관의 총 구매액(용역, 물품) 중 1% 이상 구매하여야 하나, 자체 초과 목표 달성을 위해 13%이상 구매 추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1월	
2/4분기	제1차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5월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	6월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5~6월	
3/4분기	독서통신 교육	7월	
4/4분기	제2차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12월	
	유연근무제 만족도 조사	12월	
매 월	유연근무제 이용 실적 점검	연 중	
연 중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 중	
연 중	공공구매 및 구매율 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직원) 직원들의 필요역량을 고려한 교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자기개발 및 사기양양 실현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해당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증장애인의 자활 지원
- 이해관계자
  - (행정기관장) 유연근무 실시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부서장 및 동료) 유연근무 및 연가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등 필요
- (교육기관) 해당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교육 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기대효과

-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으로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 만족도 제고 및 업무시간 이후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 공직가치 확립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역량 제고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공직 인재 양성
- 국가배려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유연근무제 활성화율	-	-	5%	6%p	전년도 유연근무활용률 52.4% 대비 6%p 증가 추진을 통해, 위원회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 활용률이 58.4%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 '16년도 중앙부처 평균 유연근무활용률 : 22%	전년 대비 유연근무 활용률* 증가분(%p) = 6(%p) *유연근무제 활용률 : 객관적 산출을 위해 행정관리역량평가 기준을 적용(연중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한 직원 수 / 전체 직원 수×100)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율	-	-	신규	5%p	전년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13.3시간) 대비 5%p 증가 추진을 통해,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14시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시간 증가분(%p) = 5(%p)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도	-	-	100	100%	분야별 법정 의무구매 기준의 130%를 구매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 (A)중소기업제품 : 65%(50%) - (B)기술개발제품 : 13%(10%) - (C)중증장애인생산품 : 13%(1%) ※ [ ]안은 법정 의무구매 기준	((A목표 구매율 달성율×0.4)+(B목표 구매율 달성율×0.4)+(C목표 구매율 달성율×0.2)×100 *목표 구매율 : A(65%), B(13%), C(13%)	디브레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콤드레 사이트 등

성과목표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방송통신 주요 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확산하고, 온·오프라인·모바일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개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방송통신 관련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고위급 면담, MoU 체결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및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교류·협력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	-	신규	71%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을 목표로 설정	대국민·대언론 정책 홍보 만족도*0.5+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0.5	방송통신 정책 수용자 설문조사 및 협상 경과 등 실적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매체이용 행태가 변화하면서 TV·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외에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글로벌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

#### □ 갈등요인

-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정책 내용이 전문적인 분야로 다소 어렵고, 국민들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정책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은 상황
-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간 규제협력 및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 갈등관리계획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직접 연결된 정책을 선정하고,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지원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Ⅰ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IV-2-①)

##### □ 추진배경

- '17년도 주요정책 내용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정책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획홍보 강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월별 중점 홍보 과제로 선정·소개하여 이용자 권익 향상 및 정책 인지도 증대
- (기관장 현장소통 강화) 기관장의 방송출연 및 기고, 강연회·설명회·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추진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방통위 주요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홈페이지 개편, 「네이버 지식iN」 운영 활성화,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온라인·모바일 홍보 강화
- (취재 지원 및 언론홍보 내실화) 보도자료 배포, 언론간담회, 정책 현장 설명회 등 언론과의 소통 확대 및 취재지원 활동 강화
- (직원 홍보역량 강화) 방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기법 및 보도자료 작성 요령 등 홍보교육 실시, 우수 보도자료 선정·시상 등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17.1월	
	'16년도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17.2월	
	홍보채널(페이스북 등) 노출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17.3월~	
2/4분기	범부처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17.5~6월	
3/4분기	직원 홍보교육 실시	'17.9월	
4/4분기	외신기자 간담회 실시	'17.10월	
	출입기자단 정책현장 방문 실시	'17.11월	
	우수 보도자료 시상	'17.12월	
연중	보도·해명 자료 배포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온라인홍보 이벤트 개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SNS(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주간 정책홍보 계획 작성		
	주요정책 기획홍보		
	위원장 연설문·기고문 작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방송·신문 등 언론사 등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주요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체계적인 정책홍보 프로세스를 통해 주요 정책별 수혜자를 선정하고, 그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조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정책 관여도 및 공감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정책홍보 만족도	65점	63점	66점	68점	68점	'17년 목표치는 과거 3년 실적 평균치(64.7점)보다 5% 상승한 68점으로 정해 적극적인 목표 설정	만족도조사결과 *방송통신정책 수용자 (방통위 홈페이지·SNS 방문 국민),대인론 (출입기자 대상)	대국민·대인론 정책홍보만족도 조사결과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②)

□ 추진배경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현안의 신속한 검토,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아시아아로의 한류콘텐츠 진출방안 및 정책협력 방안 논의	'17.2월	
	이슬람권 등 한류 방송콘텐츠 新 시장 진출 기반 마련	'17.2월	
	주요국과의 방송통신 정책 협력 및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 I	'17.3월	
2/4분기	주요국과의 방송통신 정책 협력 및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 II	'17.4월	
3/4분기	주요국과 방송통신 정책자료 교류 추진	'17.9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 계획 수립	'17.9월	
4/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7.11월	
	'17년 성과정리 및 '18년 계획 수립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 관련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등
- 이해관계자
  - 상대국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 관련 정책 당국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의제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	-	75	75%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17상반기)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16년도와 동일) ※ 국제협력 실적 : 18건 만족도 : 50%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0.5 +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0.5]×100	협력, 협상 경과 자료 및 방송통신 수혜기관 설문조사 실시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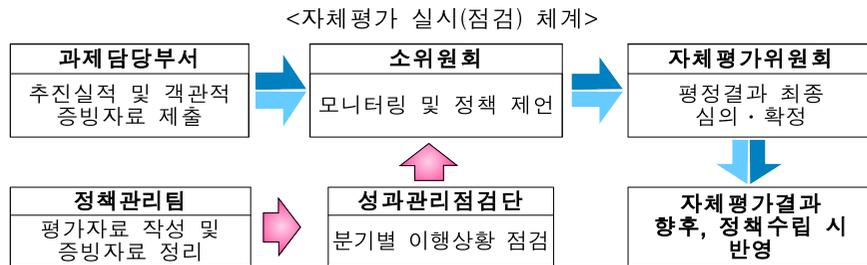
- '16.7월에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추진체계를 확립을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등 기획 및 종합·조정 업무를 수행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총괄, 평가 분야별 점검결과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평가분야 정책에 대한 업무 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

## □ 평가(점검)의 시행

- 매년 상반기에 세부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각 소관별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평정한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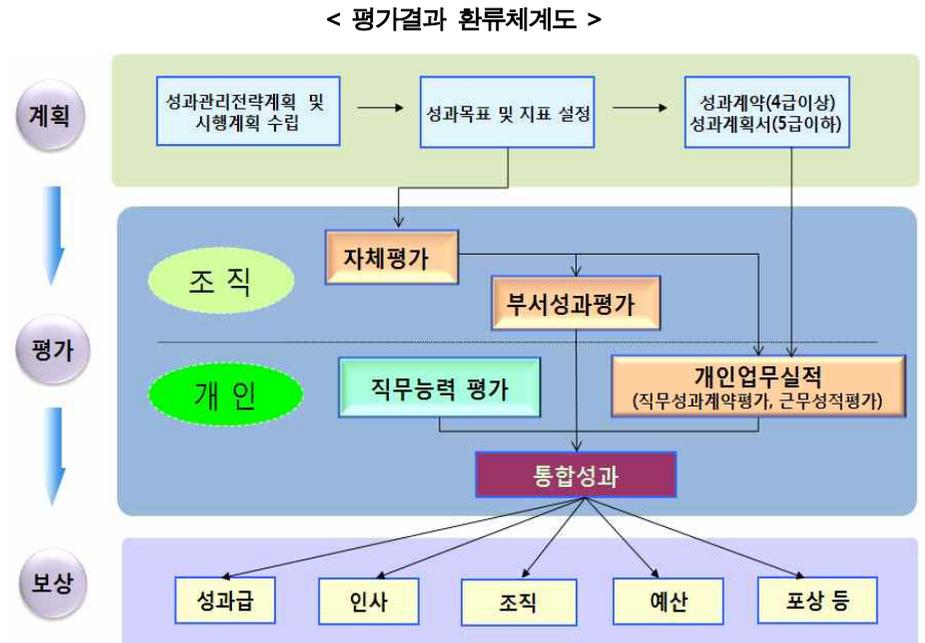
## □ 주요 일정

2017년 1/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li> <li>○ 자체평가계획 수립</li> </ul>
2017년 3/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실시</li> <li>○ 성과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li> </ul>
2017년 4/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정책설명회 실시</li> <li>○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li> </ul>
2018년 1/4분기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평가 실시</li> </ul>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성과관리의 주요 환류체계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점수로 반영하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분석 자료는 대표적인 우수·미흡사례, 개선·보완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국에 전파
- 평가결과 개선·보완 조치계획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평가 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자체평가 시 전년도 개선실적 반영)

##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

##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별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 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마련 추진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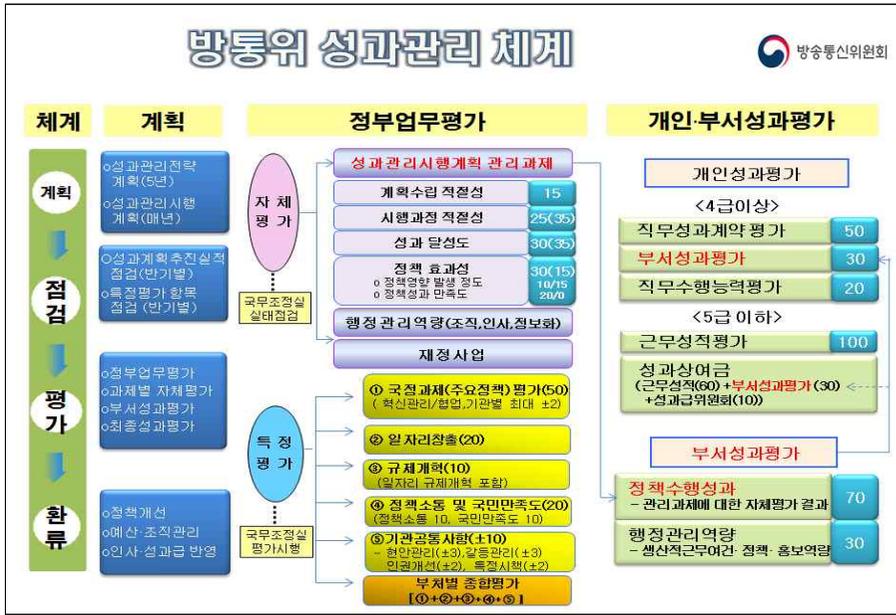
##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진·인사 심사 및 전보·파견 등 보직관리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파견 시 해당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는 개인평가 성과목표 과제로 반영·평가 하고,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개인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통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 4급 이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연초에 작성한 '성과 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 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 부서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성과급 심사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결정비율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결정

< 개인·부서평가관리 체계도 >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개인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을 현재 21%에서 3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예정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금) 지급

○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통합성과평가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구 분	개인성과평가		부서 성과평가	가 점	합계
	직무성과 계약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			
고위 공무원	50점	20점 (위원장 평가)	30점	-	100점
과장급	50점	20점 (국장 평가)	30점	위원장 가점제도 운영	100+가점점수
복수직 서기관	50점	20점 (국장 평가)	30점	-	100점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개인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을 현재 21%에서 3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예정

※ 자체평가결과 반영방법

평가제도	반영방법
직무성과계약 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는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로 전면 반영
부서성과평가	○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점수를 부서성과평가 정책수행성과(70%) 부문 평가에 100%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소관부서별로 배분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개인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을 현재 21%에서 3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예정

### 3. 변화관리 계획

####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① 집중근무시간 운영

- (개념) 방통위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

※ 방통위 집중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

09:00	09:30	11:30	12:30	14:00	16:00	18:00
	집중근무시간 (9시30분~11시30분)	중식시간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 (운영방안)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최대한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 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최대한 자제

##### ② 가족 사랑의 날 및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개념) 매주 시행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 준수를 통해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으로 자기계발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소속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통한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및 문화소비 활성화

- (대상) 모든 소속 공무원
- (운영방안)
  -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 유도 및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매주 금요일은 부서 자율적으로 정시 퇴근을 유도하여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
  - \*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되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간외를 사후 인정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직원 또는 가족과 함께 영화, 공연 등의 문화행사 참여

#### 3-2. 조직문화 개선

##### ① 자기주도적 근무시간제 설계(근무시간 선택제·집약근무제 활용)

- (개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기관·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 ① 근무시간 선택제

- (개념)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5일 근무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요일별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 예시) 월·화·수(08시~22시) 10시간, 목·금(08시~14시) 5시간 근무

###### ② 집약근무제

- (개념)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근무일을 3.5일~5일 미만으로 근무일을 조정
- ※ 예시) 1일 7시~21시까지 12시간 근무시(중·석식 1시간 공제) 주 3.5일 근무가 가능
- ※※ 개인건강 등을 고려하여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으로 한정하고 1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 (운영방안)

- 자기개발, 육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소속직원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등을 적극 유도
- 부서장은 부서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소속 직원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② 기관·부서 단위의 집단 유연근무제 활용

○ (개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실·국 및 부서별 집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업무생산성 제고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 (운영방안)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하고 이날은 부서별로 집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부서 단위로 문화행사 참여
  - ※ 부서 전체직원이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여 “문화가 있는 날” 참여하는 등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국 단위 추계문화 행사, 워크숍 등 실시시 실국 또는 부서 전체가 유연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월 1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부서장 참여 유도

③ 연간 휴가계획 수립

○ (개념)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운영방안)

- 개인별로 권장연가 일수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
  -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연중 분산하여 계획 수립
- 부서장은 부서원의 연가가 특정 월·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을 조정한 후 결재
  -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날·추석·연말연시·주말 전후의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

④ 권장연가제 실시

○ (개념)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 공지 (매년 3월 31일까지)

○ (운영방안)

- 권장연가 일수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1인당 평균연가일수 등을 고려하되 전년도의 사용일 수 이상으로 설정
  - ※ ‘17년도 방통위 권장연가일수는 전년도 평균 연가 사용일 수 등을 고려하여 13일로 설정하고 매년 전년도 평균 연가일수보다 높게 설정
- 권장연가 일수(13일)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
-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매월 권장연가 일수 또는 개인의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상의 일수에 미달하는 직원이 연가를 사용토록 유도

### 3-3. 직원교육 강화

####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 초청 및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

####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 과정 및 전화 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 활동에 대해 청렴마일리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

####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상시학습제도 정착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를 수립 할 때에 개인의 부족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방통위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 성과지표 관리방법

-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 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방통위 성과목표 과제별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성과관리시행 계획 수립시 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각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을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살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소통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복합지표는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므로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 지표 개발 노력
- 성과지표는 해당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로 가급적 성과목표별 1개, 관리과제별 2개 이내로 설정

####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 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 정책참여 활성화

-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통신 분야 업무가 이용자의 편익과 연계된 정책이 다수이므로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찬반토론, 의견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활성화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정책토론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이슈토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이슈 발굴 및 온라인 토론회 실시	자유토론 (설문조사)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 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22명)

- 운영은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 방송통신 규제재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제4기 방통위 출범("17.8.1)에 따라 생활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개선 등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 규제재설계란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 공모 주제 : “소통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 품질 제고”

공모 세부 주제	
① 불공정행위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	
② 기관 간 중복,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 저해 등 과도한 규제 완화 방안	
③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④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제고 방안	
⑤ 규제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 청렴도 제고 방안	

-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7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고지, 유관기관 포스터·공고문 게시 등 추진

붙임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정량지표
			소계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과목표	8	8	0 (%)	0 (%)	6 (75%)	2 (25%)	8 (100%)
	관리과제	26	34	0 (%)	2 (5.9%)	10 (29.4%)	22 (64.7%)	34 (100%)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이행률(%)	지상파방송 관련 조건부가 여부*0.5+ 종편PP 관련 조건부가 여부*0.5	100%	정량	산출	
2.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① 신규 방송 서비스 활성화율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의 무편성 비율 이행도 *0.5)+(EBS 2TV 시청자 시청자 인지도* 0.5)]	100%	정량	산출	
<b>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실적	7건	정량	결과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국내의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페이지 수	$\frac{(a_1 + \dots + a_n) + (b_1 + \dots + b_n)}{n}$ n=점검일수 ai(국내), bi(국외)=점검일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 수	13.1개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55%	정량	산출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방송산업 기반 구축율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 0.5)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 0.2) +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0.3)	60.7%	정량	산출	
<b>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정부업무평가 '보통' 이상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통	정량	결과	
2. 대내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대내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율	대국민·대인론 정책홍보 만족도*0.5+방송통신 국제 협력 향상도*0.5	71%	정량	산출	

###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b>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제작편성 자율성 관련 제도개선 이행률	① 편성규약 운영 등 실태조사, ②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③ 재허가 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 여부  * ①*0.3+②*0.3+③*0.4	100%	정량	결과	
	②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60%)	전국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50만명	정량	산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40%)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0.9점	정량	결과	
	③지역방송 활성화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70%)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환산)	86점	정량	결과	
		지역방송 교육 이수율(30%)	교육 이수인원/교육 등록인원×100 (80% 이상 교육시간 참석시 인정)	85%	정량	산출	
	④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방송재난 대비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17년도 안전점검 시설수(80개소)/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3개소)] × 100	77.6%	정량	결과	
⑤공익·장애인채널 제도 개선 추진	공익채널 제도개선 추진율	(공익채널 기본계획(안) 마련x0.5)+(공익채널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x0.5)	100%	정량	과정		
<b>2.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지상파UHD 방송 도입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이행도	'17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5/100	90%	정량	결과	
	②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	EBS 2TV 시범 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70점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지표 종류		비고
				목표치	정량화	성격	
<b>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b>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b>							
	①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분쟁조정 제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상정	100%	정량	과정	
	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선시장 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	(유선시장 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준수 건수/유선시장 경쟁 가이드 현장 모니터링 총 건수)*100 *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항목 : 경쟁지급 수준 및 허위 과장광고 수준	82%	정량	결과	
	③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율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 * * 지원금 공시제시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등	96%	정량	결과	
	④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향상도	[(개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 점수] x 100	14%	정량	결과	
<b>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b>							
	①온라인상 안전한 개인 (위치)정보보호 및 활용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PIMS) 인증 유지 사업자 수 (50%)	기존 PIMS 인증 유지 기업 수 + 당해년 PIMS 인증 신규 획득 사업자 수	51개	정량	산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50%)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만족도 x 0.5)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수요자(경찰청, 국민안전처) 만족도 x 0.5)	75점	정량	결과	
	②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 노출불법 유통 탐지 삭제율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건수 / 탐지건수)*100	88%	정량	산출	
	③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50%)	윤리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6.9점	정량	결과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50%)	외부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이메일 각각 1,500명의 이용자가 수신하는 스팸량 을 측정	0.66통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지표 종류		비고
				목표치	정량화	성격	
<b>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b>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b>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63점	정량	결과	
				②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 항목 :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만족도 등	77.6점
	③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40%)	방송사업자 305개 채널수 모니터링 결과  * 전체 채널수 - (1회 위반 방송 채널수 x 1.0) + (2회 위반 방송 채널수 x 1.5) + (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 x 2.0) + (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 x 3.0) / 전체 채널수 x 100	79.8%	정량	결과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율(60%)	실태점검 이후 제도개선 및 업무 절차 개선 등 건수 ÷ 개선계획(4건)	100%	정량
<b>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b>							
	①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시장 상생 발전율	(표준계약서 도입률* x 0.7) + (만족도** x 0.3)  * 도입률 : 실태점검대상 방송사업자 및 외주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도입률(80% 이상 시 100점 기준)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70%	정량	결과	
				②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기업인지도 상승(5점 만점) x 0.5) + (매출증가 기여도(5점 만점) x 0.5) * 지원기업대상 설문 조사 결과 활용	4.15점
	③통합시청접유율 조사 기반 구축	통합시청접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조사패널 대표성 개선율*0.6) + (N스크린조사 시청사향 개선도*0.4) <측정산식> [(패널실적차)/(패널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개선사항도출건수)*100] *0.4	83%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년	지표 종류		비고
				목표치	정량화	성격	
<b>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b>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b>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①영상회의의 건수 (40%)	영상회의 개최 건수 * 영상회의의 활용대상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17년도 영상회의의 활성화 계획 및 평가지침>에 따라 12종 115회로 설정	115건	정량	산출		
		②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율 (60%)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100%	정성	산출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50%)	AL(%)=(T/5)×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76.5%	정량	결과		
	②비상대비 및 보안 점검 달성률(50%)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①규제개혁과제 이행률	이행률(%) = ∑(과제별 이행단위과제 건수/과제별 단위과제 건수)/규제개혁과제 건수 × 100	90%	정량	산출		
④ 일질하는 공직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활성화율(40%)	전년 대비 유연근무활용률* 증가분(%p) = 6(%p)	6%p	정량	결과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율(30%)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시간 증가분(%p) = 5(%p)	5%p	정량	결과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도 (30%)	{(A목표 구매율 달성율×0.4)+(B목표 구매율 달성율×0.4)+(C목표 구매율 달성율×0.2)}×100 * (A)중소기업제품, (B)기술개발제품, (C) 중증장애인 생산품	100%	정량	산출		
<b>2. 대내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홍보 강화	정책홍보 만족도	만족도조사결과 * 방송통신정책 수용자(방송위 홈페이지, SNS 방문 국민), 대인론(출입기자 대상)	68점	정량	결과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0.5}×100	75%	정량	결과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b>		
<b>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적책임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업무 4-1)	
③ 지역방송 활성화	지역방송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국정 70-2)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업무 1-4)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업무 1-2)	
⑤ 공익·장애인채널 제도개선 추진	방송의 공적책임 (업무 1-1)	
<b>2.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b>		
①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미디어 산업성장고 균형발전 (국정 70-3)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업무 2-2)	
② EBS MMS 본방송 도입 기반 마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업무 2-2)	
<b>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b>		
<b>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b>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1)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2)
	④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3)
<b>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b>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보호 및 활용지원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4)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4)
	③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국정 4-3)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업무 4-3)
<b>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b>		
<b>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b>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제고 (업무 1-1)
	②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국정 70-1)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업무 4-4)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업무 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b>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업무 2-1)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제고 (업무 1-1)
	④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업무 4-2)
<b>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b>		
<b>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b>		
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④ 일갈하는 공직환경 조성	
<b>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